

ISSN 2093-6044

제6권 제1호

2015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한국이민학

일반논문

호주의 대아시아 이민협력 현황과 성과 및 향후과제:
비호신청자(asylum seekers) 관리 문제를 중심으로

문경희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연결망과 구직경로가 임금수준에 미치는 효과

박형기

소득수준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분석:
국가자공심의 차별적 효과를 중심으로

윤혜수



한국이민학회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Association

한국이민학은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의 기관지로서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발간한다. 논문기고자격은 원칙적으로 한국이민학회의 회원으로 제한한다. 단, 비회원이 투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전제로 한다.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원고제출 및 집필요강은 본지의 뒷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한국이민학의 정기구독을 원하는 개인 및 단체는 다음 주소로 연락하면 된다.

(우) 151-74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16동) 538호 김석호 교수 연구실
전화: (02) 880-4103
전자우편: seokhokim@snu.ac.kr
인터넷 홈페이지: <http://kimanet.org>

회원연회비

일반회원 : 3만원

대학원생 : 2만원

계좌번호: 기업은행 221-253841-04-011(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

2015년 한국이민학회 임원진

회장단

회 장	정기선(IOM이민정책연구원)
부 회 장	설동훈(전북대학교),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한건수(강원대학교)
감 사	강동관(IOM이민정책연구원), 차규근(법률사무소 공존)

이사단

총무이사	문경희(창원대학교)	편집이사	김석호(서울대학교)
연구이사	송영훈(강원대학교), 이윤석(서울시립대학교), 최충(한양대학교)		
국제이사	박미형(IOM서울사무소), 한승미(연세대학교), Thakur Subedi(경주대학교)		

한국이민학

2015년 제6권 제1호

한국이민학

2015년 제6권 제1호

연구논문

호주의 대아시아 이민협력 현황과 성과 및 향후과제:
비호신청자(asylum seekers) 관리 문제를 중심으로 | 문경희5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연결망과 구직경로가 임금수준에 미치는 효과 | 박형기 .. 41

소득수준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분석:
국가자긍심의 차별적 효과를 중심으로 | 윤혜수.....74

호주의 대아시아 이민협력 현황과 성과 및 향후과제*

비호신청자(asylum seekers) 관리 문제를 중심으로

문경희**

본 연구는 호주정부가 변동하는 글로벌 정치, 경제 여건에 대응하여 어떻게 자국의 이민정책 방향과 전략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글로벌 이민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가능성 여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의 네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첫째, 동시대 대다수 국가들이 글로벌 수준의 이민협력 거버넌스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난민·비호신청자와 관련한 쟁점은 무엇인가? 둘째, 호주의 최근 이민 현황과 정책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셋째, 호주의 비호신청자 문제와 정부의 정책적 대응 프레임과 방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넷째, 호주의 대표적인 글로벌 및 지역 수준의 다자·양자 협력 사례는 무엇이며, 그 내용은 어떠한가? 본 연구의 주요 논지는 최근 들어 글로벌 및 지역 수준의 양자 및 다자적 이민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국제사회 전체가 동의하는 공식적인 글로벌 이민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각 국가들이 이민을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목표(경제, 안보, 인권 등)가 동일하기도 하지만 상충되기도 한다는 점, 특히 유입국의 입장에서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설만한

* '이민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한 한국이민학회 춘계학술대회(서울지방 고용노동청 5층 컨벤션룸, 2014년 5월 29일)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창원대학교 부교수, khmoon@changwon.ac.kr

명분도 동기도 부족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주제어: 국제이민협력, 호주의 이민정책, 난민 및 비호신청자, 발리 프로세스

I. 들어가며

최근 호주의 영주 이민 동향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아시아 출신 이민자 유입이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 한 가지 흐름이라면, 나머지는 고학력이나 기술 중심의 엘리트 이민자 유입이 대세라는 점이다. 20~30년 전만 해도 한편에서는 영국 및 뉴질랜드 등의 앵글로계 백인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저숙련 저임금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비앵글로계 노동 인구가 호주사회에 집중적으로 유입되었었다. 더욱이 이러한 이민자의 인종적·계층적 변화뿐 아니라, 최근 호주정부는 영주 정착프로그램 보다는 단기 순환프로그램의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호주 이민정책의 무게 중심이 영주 정착 중심에서 단기 순환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단기 순환 이민의 경우에는 주로 유학생이나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를 포함한 저숙련 노동 인력 중심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위와 같은 큰 흐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10 여 년 기간 동안 호주사회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민자들은 배를 타고 호주 해상으로 접근해서 망명을 시도하고 있는 소위 ‘보트 피플’이다. 이들은 보는 이들의 시각에 따라 난민선을 타고 와서 호주로 망명을 시도하려는 비호신청자(asylum seekers)로 불리거나, 또는 밀입국선을 탄 불법 이민자로도 호명된다. 수천대의 선박이 거의 매해 호주 영해에 나타나면서 호주 정치권은 그들의 사후 처리뿐 아니라 사전 예방 문제에 관해서도 정쟁을 일삼고 있다. 그야말로 호주 정부의 ‘보트 피플’ 문제는 국가적 안보 및 경제, 정체성의 위기 논의와 연계되어 호주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정책 이슈 중 한 가지로 다뤄지고 있다.

한편 다른 이민자 유입국과 마찬가지로, 호주의 이민정책도 글로벌 경제주기

변동에 따른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2000년 이후에는 9.11 테러사건 이후에 나타난 정치적 변동이 이민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몇 십 년 전만 해도 지구상의 대다수 국가들은 주권을 가진 독립 국가로서 자국의 필요에 따라 이민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현상이 심화된 지난 20여 년 동안에 인구 이동의 유형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동의 횟수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 교역과 마찬가지로, 사람 간의 이동에서도 일국이나 양국 차원 보다는 지역이나 글로벌 차원의 다자간 협력을 요구하는 사안도 증가하고 있다. 지리적 위치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공동체 내에서 나타나는 합법적인 인적 교류가 국제 이민협력의 한 축을 이룬다면, ‘보트피플’이나 인신매매 피해자처럼 비규범적인(또는 비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이뤄지는 인구 이동이 또 다른 축을 이룬다. 현재 호주의 경우에도, 한편에서는 국가적인 해외인력 수요에 따라 단독적으로 선별적인 이민정책을 전개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대외정책 차원에서 양자 및 지역·글로벌 수준의 다자간 이민협력을 통해 국경을 규제·관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아시아 분쟁국 출신의 ‘보트 피플’이나 국제적 범죄조직에 의한 인신매매 피해자 유입이 증가하면서 호주 정부는 국제 이민협력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호주의 대아시아 이민협력은 큰 맥락에서 호주의 대아시아 협력과 연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영국이라는 국가 및 앵글로계 백인이라는 인종, 그리고 유대 기독교라는 종교를 토대로 국가 정체성을 형성했던 호주정부는 20세기 중반까지 아시아를 인종적·문화적·정치적 ‘타자’로 간주했었다. 가난하고 공산화될 위험이 있는 타 문화권의 사람들이 자국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인식에 백호주의 이민정책을 전개했던 호주정부의 아시아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으로 바뀐 것은 불과 30-40여 년 전의 일이다. 경제적으로나 안보 측면에서 호주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가는 아시아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호주 정치권 내로 확산되면서 아시아 관여(Engagement with Asia)가 대외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¹⁾ 경제와 안보 영역에만 선별적으로 관여하지는 보수정당들

1) 호주의 아시아 관여 정책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문경희, 2010. “호주의 아시아 관여

과 이민을 포함해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관여하지는 노동당의 입장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느 당이 정권을 잡던 간에 호주의 대아시아 협력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특히 노동당 정부는 호주의 중견국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과 아시아 약소국을 잇는 교량국 역할을 자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동당 정부는 아시아와 자국, 미국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공동체인 APEC 설립을 제안하고 주도하기도 했다.²⁾ 아시아 국가들과 갈등이나 외면보다는 글로벌 법질서와 규범을 토대로 구축된 협력 관계를 통해 자국의 경제적 생존 및 안보와 사회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 호주정부는 이민, 특히 비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호주로 진입하려는 이민자나 비호신청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과 양자적 또는 다자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호주정부의 발리 프로세스와 인신매매 피해자 및 비호신청자 수용과 관련된 국제이민협력에 대한 노력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호주의 국제이민협력이 이민 유형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또한 협력의 필요성이나 진행 방식이 글로벌 인권 규범이나 법질서가 제시하는 바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는 근본적으로 국제사회에 공식적인 이민협력 거버넌스(governance)가 부재하다는 사실과, 다른 글로벌 이슈와는 달리 국제이민 정책이 여전히 영토 주권을 가진 국가 수준에서 상당 부분 결정된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아래의 질문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동시대 대다수 국가들이 글로벌 수준의 이민협력 거버넌스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난민·비호신청자와 관련한 쟁점은 무엇인가? 둘째, 호주의 최근 이민 현황과 정책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셋

(engagement) 정치: 국제정치경제 변동과 호주 정당 간의 경쟁적 대아시아 관점.” 《세계지역연구논총》 28(3): 157-184.

2) 호주 노동당 정부는 이웃 아시아 지역에 미국과 함께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위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지역공동체 구성 이니셔티브를 먼저 제안하는 외교적 성향을 보인다. APEC, 케언즈 그룹(Cairns Group) 운영 사례 뿐 아니라, 2000년대 후반에 제안된 ‘아시아태평양공동체’(Asia Pacific Community)가 그 예이다. 호주의 중견국 외교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문경화·이희진, 2012. “호주 노동당 정부의 중견국 외교에 대한 고찰: 배경 및 시기별 특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22(2): 195-224.

제, 호주의 비호신청자 문제와 정부의 정책적 대응 프레임과 방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넷째, 호주의 대표적인 글로벌 및 지역 수준의 다자·양자 협력 사례는 무엇이며, 그 내용은 어떠한가?

본 연구의 주요 논지는 최근 들어 글로벌 및 지역 수준의 양자 및 다자적 이민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국제사회 전체가 동의하는 공식적인 글로벌 이민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각 국가들이 이민을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목표(경제, 안보, 인권 등)가 동일하기도 하지만 상충되기도 한다는 점, 특히 유입국의 입장에서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만한 명분도 동기도 부족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더욱이 글로벌 이슈 중에서 이민과 국경통제에 대한 결정은 예나 지금이나 주권 국가의 권한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다만 노동 및 난민 등에 관한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가 국가적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하지만, 국가 구성원들의 인권 및 법치주의 수준에 따라 그 영향력이 결정된다. 또한 비호신청자 처우 문제는 유입국이 그들을 난민으로 보느냐, 아니면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합법적 이민 질서를 위협하는 범법자로 보느냐에 따라 국제협력의 성격과 내용이 달라진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호주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와 같은 유입국들이 변동하는 글로벌 정치 및 경제 여건에 따라 어떻게 자국의 이민정책 방향과 국제협력 전략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다.

II. 글로벌 이민협력 거버넌스와 비호신청자 관리 문제

무역이나 환경, 금융과 같은 초국적 이슈들은 글로벌 수준에서 합의된 제도적 틀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반면, 이민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도적 틀이 없을 뿐 아니라 유엔 산하 단독 이민기구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 간 사람의 이동이 늘 있었는데도 국가들이 독립된 이슈로 이민에 관한 글로벌 규범이나 제도 마련 및 다자간 협력을 위한 공식적 기반 마련에 주력하지 않았다는 점은 개별 국가적 입장에서 그러한 노력이 굳이 필요치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체로 이민협력은 권리, 안보, 경제라는 세 가지 중요한 목표를 가지는데,

이들은 서로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때문에 글로벌 거버넌스를 통한 이민협력은 경우에 따라 모든 국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세 가지 목표가 상쇄되어 달성되는 경우도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위 세 가지 목표 모두가 중요하게 다뤄지지만, 국가들은 상황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통합된 이민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긴 사실상 어렵다(Betts, 2011: 3).

특히 글로벌 인구 이동 중에서도, 저숙련 노동자들의 노동이민을 위한 글로벌 수준의 거버넌스가 부재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유입국들의 관심 또한 크지 않다. 유입국들이 글로벌 수준에서 저숙련 노동력의 이동에 대한 규범과 법제 형성에 관심이 적은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Kosiowski, 2008: 108-110). 첫 번째로 유입국의 수요에 따라 항시 이주 가능한 저숙련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노동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유입국의 입장에서 굳이 국제협력력이라는 미명 하에 노동이민자 유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들의 권리 신장에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유입국 정부가 값싼 노동력 경쟁이 가져다주는 일부 경제적 혜택을 보기 위해 자칫 잘 못하면 자국 저숙련 노동자들과 정치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또한 그로 인해 자국민과 이민자 간에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문화적 혼란을 감수하는 선택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요인은 노동이민이 국가 간 상호 호혜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과 관련 있다. 즉,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상품 무역은 교역국 쌍방에 혜택을 가져다주지만, 노동이민의 경우에는 저임금 국가(송출국)에 비해 고임금 국가(유입국)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유입국의 정치 지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숙련 노동력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여부가 유권자들의 리더십 선택에 영향을 줄만큼 결정적인 선거 이슈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과 관련 있다. 때문에 현재까지 국제노동이민 거버넌스나 레짐(regime) 형성에 앞장서거나 크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유입국의 정치 지도자를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국제사회가 이민과 관련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래에 나타나듯이, 지난 백 여 년 동안 국제사회는 이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구나 회의, 합의 등을 만들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표 1> 대표적인 글로벌 이민 거버넌스 사례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1919
국제이민기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IOM, UNHCR	1950
지역협의체 - 정부간 협의체 First 'Regional Consultative Process'(RCP) - Intergovernmental Consultations(IGC)	1985
유엔이주노동자권리협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1990
국제 인구개발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Cairo	1994
국제이민에 관한 Doyle 보고서 'Doyle Report' on International Migration	2002
글로벌 이민위원회 Global Commission on International Migration(GCIM)	2003-5
첫 번째 유엔 이주 및 개발에 대한 고위층 회담 First UN High-Level Dialogue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2006
첫 번째 이민과 개발 글로벌포럼 First Global Forum on Migration and Development(GFMD)	2007
국제카톨릭이주위원회 발족 Launch of ICMC's 'Conversations'	2009
두 번째 유엔 이주 및 개발에 대한 고위층 회담 Second UN High-Level Dialogue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2013

베츠(Betts, 2010)에 따르면, 글로벌 이민 거버넌스는 이민과 관련해서 한 국가 차원을 넘어서 존재하는 일련의 규범이나 규칙, 원칙 및 의사결정 절차 등을 포함한다. 그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글로벌 이민 거버넌스를 크게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제안한다. 첫째는 미약한 수준이긴 하지만, 이민 통치를 위한 공식적인 다자주의이다. ILO와 UNHCR, ‘유엔이주자권리협약’, ‘이주와 개발에 대한 유엔 고위층회담’ 등이 이에 속한다. 하지만 ‘유엔이주자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 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 또한 ‘유엔 이주 및 개발에 대한 고위층 회담’ 참여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그리 높지 않다는 국제 이주 이슈에 대한 다자간 협력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다음은 이민과 관련된 법제나 규범 등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정책 분야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제이민법은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이민에 관한 의무사항이나 원칙이 국제인권법, WTO 법, 국제해상법 등에 포함되어 있다. UN 18개 기관이 함께 참석하는 ‘글로벌 이민그룹’(GMG)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당수 글로벌 이민 거버넌스는 비공식적 네트워크(informal networks) 수준으로 존재한다. 지역협의체(RCP)나 비호신청자와 난민, 이민에 관한 국가간 협의체(IGC)가 이에 포함된다. 이들 협의체는 지역내, 또는 지역간, 초지역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이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정보 및 모범 관행 공유, 역량 강화 등에 역점을 둔 활동을 한다. 특히 IOM이나 GFMD는 주로 이러한 비공식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한다.

한편, 이민의 유형에 따라 거버넌스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베츠는 ‘글로벌 공공재론(Global Public Goods Theory)’에 주목한다(2011: 311-312). 재화에 비용을 지불하는 모든 국가들이 동등하게 혜택을 보거나, 또는 한 국가가 소비한다고 해도 다른 국가가 그 재화로부터 얻는 혜택이 감소되지 않을 때 이를 글로벌 공공재라고 한다. 기후변화 완화와 같은 이슈가 이에 속하고, 이런 경우에 국가들은 공식적인 다자협력을 통해 이슈 해결을 기대한다. 하지만 이민의 경우에는 종종 모든 국가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주기 보다는 한 국가의 정책이 다른 이웃 국가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공통의 목표를 가진 국가들끼리 협력을 추구하는 양자나 지역 층위의 거버넌스를 형성하기도 한다. 아래 표는 이민 유형에 따른 거버넌스 층위와 재화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표 2> 이민 유형에 따른 거버넌스 층위와 재화 유형

이민 유형	거버넌스 층위	재화 유형
난민	다자적	공공재
불법/저숙련 이민	지역적	클럽 재화(club goods)
고숙련(기술) 이민	독자적/양자적	사적 재화(private goods)

난민보호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글로벌 공공재의 사례로 꼽힌다. 이는 글로벌 안보나 보편적 인권의 차원에서 봤을 때 모든 국가에게 혜택이 생긴다고 볼 수 있고, 또한 한 국가가 누리는 혜택이 다른 국가의 혜택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

는다는 의미이다. 때문에 국가들은 다자적 협력레짐 형성에 반대하지 않는다. 불법이민이나 저숙련 노동의 경우에는 ‘클럽 재화’로 꼽히는데, 이는 한 유입국의 이민 규제가 지리적으로 근접한 다른 유입국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때문에 일부 공통의 목표를 가진 국가들은 지역적 또는 지역 간, 초지역적 층위의 협력레짐 형성을 통해 상호 혜택을 보호하고, 보호받으려 한다. 마지막으로, 고숙련 이민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송출국과 유입국, 이민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사적 재화에 해당된다. 이 경우에는 개별 국가들이 다자적 협력 보다는 독자적으로나 또는 파트너국과의 양자적 협력을 통해 이민정책을 전개한다.

그러나 위의 글로벌 공공재론은 최근 호주를 비롯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국제 이민협력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보인다. 대표적으로, 국제사회는 난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난민협약이라는 글로벌 다자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고, 이를 위한 행정기구로 UNHCR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기준 유엔난민협약에 서명한 국가는 총 145개국으로 비서명국도 상당수 존재하며, 더욱이 서명국이라고 하더라도 협약 준수를 강제할 수는 없다. 때문에 서명국이라고 하더라도 협약 사항을 엄격히 지키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호주를 포함한 상당수 서명국의 경우 국제인권규범이나 난민협약에 따라 개정한 국내법과, 또한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로 인해 국경통제와 이민 관련 정책결정에 대한 스스로의 권한을 제약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어떤 이민자를 얼마나 많이 수용할지에 대한 결정은 상당 부문 유입국 정부에 의해 내려진다는 점에서, 다른 글로벌 이슈에 비해 국제이민은 국가 주권을 지켜주는 자적 협력레짐 형성에 반대하지 않는다. 불법이민이나 저숙련 노동의 경우에는 ‘마지막 보루’라고도 볼 수 있다(Opeskin, 2012).

한편, 난민 및 비호신청인의 수가 수용국의 재정착 지원수를 능가하는 실정이라는 점에서 협약에 따라 재정착 지원을 받는 난민이나 비호신청인 수는 제한적이다. 특히 9.11 테러사건 이후 주요 난민 수용국들이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유엔난민협약보다는 국경통제에 더욱더 용이한 양자 및 지역 차원의 협력을 통해 난민 재정착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난민 수용국들이 난민보호 보다는 국가 안보에 대외 협력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점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2000년대 초부터 호주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이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자국의 비호신청자 구금소

를 이웃 국가로 이전 설치해서 UNHCR의 난민지위 신청 및 선정 절차를 거치도록 한 사례를 들 수 있다.³⁾ 협약에 서명한 국가들이 타국과의 협력을 통해 역외 구금소를 설치하는 이유는 비호신청자들로 하여금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자국 진입이 어렵다고 판단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난민 유입국들이 안보상의 이유로 진행하고 있는 양자 및 지역차원의 협력이 오히려 유엔난민 협약과 같은 글로벌 다자적 난민협력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Nethery and Carl Gordyn, 2013: 179).

다른 한편, 베츠는 난민보호가 글로벌 공공재라서 비용을 지불하는 모든 국가에게 혜택이 돌아가긴 하지만, 이는 한편으로는 적절한 비용 지불 없이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무임승차(free riding) 국가를 양산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그는 난민들은 주로 남쪽(South) 국가 출신이며 그들 대다수는 다른 이웃 남쪽 국가로 유입되어 재정착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난민지원에 대해 의무감을 가지지 않는 북쪽(North) 국가들이 남쪽 국가에 무임승차하는 것과 같다고 언급했다(Nethery and Carl Gordyn, 2013: 180-181).⁴⁾ 더욱이 북쪽에 속하는 수용국들이 가난한 이웃인 남쪽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비호신청자를 협력국에 설치된 구금소에 머물도록 하는 것은 난민 수용에 대한 부담을 타국과 공유함과 동시에 전이하는 현상으로도 설명된다(Noll, 2003: 236-238). 이러한 협력은 남-북 국가들이 난민 및 비호신청인 처리 이슈를 국가 또는 지역의 안보 및 법치질서 확립, 무역, 이민, 발전 등의 다른 이슈와 연계해서 다룰 때 더욱 용이해진다. 난민 및 비호신청인 문제 처리를 위해 남쪽 국가가 북쪽 국가와 정책적으로 협력하기로 결정하는 데에는 북쪽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인센티브의 영향이 크다. 즉, 북쪽 국가가 제공할 남쪽 국가에 대한 발전원조 지원금 확대와 정책 협력에 드는 모든 비용 지불 등의 재정적 혜택과 더불어 양국 간 외교관계 강화 등이 주요한 인센티브에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인센티브는 국익 추구라는 명분하에 양쪽 협력 국가 간의 부담 공유 및 전이를 위한 정책 전이를 가능하게 하는데, 대표적으로 호주와 인도네시아 간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사례가 이에 속한다.

3) 미국이 과테말라에, 유럽연합에 우크라이나에, 그리고 호주가 태평양 연안 섬국가인 나우루에 설치함

4) 재인용: Alexander Betts. 2009. *Protection by Persuas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Refugee Regime*,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결론적으로, 위 논의는 이민의 유형에 따라 협력 거버넌스의 층위가 다양하게 결정된다는 점과, 또한 그것은 각 국가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알려준다. 대표적으로, 난민 및 비호신청인 보호에 대한 유엔난민협약 등의 글로벌 다자적 협력 거버넌스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일부 국가는 국가 안보 및 사회질서 유지라는 목표를 위해, 또 다른 일부 국가는 경제 및 외교적 실리 추구라는 목표 하에 양자 및 지역 협력을 추구한다. 결국 이러한 양자 및 지역 협력은 난민 및 비호신청인들이 유엔난민협약에 의해 부유국으로부터 보호받고, 재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빼앗아 가기도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음 장부터는 호주 사례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자 한다. 호주의 이민협력 거버넌스 이슈와 사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호주의 최근 이민 현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다.

III. 최근 호주의 이민과 정책 현황

2013년 기준 호주의 전체 인구는 약 2천 3백만 명에 이른다. 이는 우리나라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서, 호주는 넓은 영토에 비해 인구가 매우 적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들어 출산율이 매해 2% 이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인구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현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호주사회는 청·중년층의 산업노동인력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호주정부는 이러한 인구학적 문제를 선별적 이민제도를 통해 상당 부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호주에 유입된 이민자 현황을 호주 이민국적성(DIAC)의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2013), 194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7백 5십만 명의 이주민이 유입되었다. 그 중에 약 8만 명은 인도주의 프로그램 하에 난민 자격으로 호주에 유입된 사람들이다. 한편, 오늘날 호주 인구 네 명 중 한명은 해외 출생자이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호주에는 예나 지금이나 영국 출신 이민자가 가장 많다. 해외 출생 이민자 중 약 20.8%가 영국 출신이며, 다음으로 뉴질랜드(9.1%), 중국(6%), 인도(5.6%), 이탈리아(3.5%), 베트남(3.5%), 필리핀(3.2%), 남아공(2.8%), 말레이시아(2.2%), 독일

(2%), 기타국가(41.2%) 순이다. 이를 대륙별로 봤을 때, 아시아 출신 이민자는 전체 인구의 약 12%를 차지한다. 그 중 호주 이민의 역사가 제일 긴 중국 출신 인구가 가장 많으며, 인도가 그 뒤를 따른다. 최근에는 아시아에서 이 두 국가 뿐 아니라 필리핀, 한국,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출신 이민자 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른 한편, 현재 호주는 약 200여 국가에서 영주권자를 수용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많은 영주권자를 보낸 국가는 뉴질랜드이다.⁵⁾ 2011.7~2012.6 기간 동안 호주에 정착한 영주권자는 총 184,998명으로, 그 중에 뉴질랜드 출신은 47,397명(25.6%), 인도 29,018명(15.7%), 중국 25,509명(13.8%), 영국 25,274명(13.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같은 기간에 방문비자나 임시거주 비자 발급을 통해 호주로 유입된 인구는 전체 4,216,984명에 이르렀다. 이 중 방문비자 발급자는 3,537,65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워킹홀리데이메이커 222,992명, 학생 253,047명, 사업상 장기체류 125,070명, 고등교육 수료 후 임시체류(Skilled Graduate) 39,943명, 기타 38,281명이다. 단기 체류자 중에는 저임금 비숙련 노동에 참여하는 워킹홀리데이메이커와 고등교육 중심의 유학생 비중이 상당히 높다.

호주의 영주 이민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인 기술(skilled), 가족, 인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DIAC, 2013). 기술 이민자의 경우에는 전체 이민 쿼터에서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호주에서 부족한 직업군의 전문 인력을 기술이민을 통해 수용하고 있으며, 기술이민직종리스트(Skilled Occupation List)에 포함된 직종 종사자만 자격이 된다. SOL에는 건축, 전기전자, 의료, 교육, 사회복지 등 179종에 이르는 직업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기술이민에는 필요한 전문 인력을 고용주가 지명하는 고용추천 프로그램(Employer Nomination Scheme)과, 인구가 매우 낮은 지역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지원 하에 고용주가 지명하는 지역후원이민 프로그램(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이 포함된다. 한편, 임시거주 이민의 경우에는 임시 사업이나 고용주 스폰 일반취업(457비자), 학생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임시거주 노동인력의 경우 대다수가

5)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호주-뉴질랜드 간의 'Trans-Tasman Travel Arrangement'(TTTA)에 따라 영주권 취득 없이도 호주에 장기 거주할 수 있음(DIAC, 2013). TTTA에 관해서는 추후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함.

SOL에 포함된 저숙련직에 종사하며, 최대 4년 동안 호주에 체류할 수 있다. 가족 이민의 경우에는 주로 기술이민자나 난민의 가족(주로 배우자 및 자녀, 부모 등)을 유입하는 프로그램이다. DIAC은 매년 5월 해당 연도의 각 비자 발급 건수를 결정하는 이민계획수준(Migration Planning Level)을 정한다. 2012~2013년의 경우에는 기술이민으로 유입된 사람 수가 128,973명으로 전체 이민자 중 68.0%에 이르렀고, 가족이민의 경우가 60,185명으로 31.7%에 해당되었다.

마지막으로 인도주의 보호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뉘는데, 첫째가 호주로 이미 유입된 이민자가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국내 보호 및 정착 프로그램’(Onshore Protection Program)이고, 두 번째는 호주 밖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이른바 ‘역외 정착 프로그램’(Offshore Resettlement Program)이다(DIAC, 2014). 국내 프로그램은 호주에 입국 후 난민자격 신청 및 선정 절차를 받는 경우라면, ‘역외 정착 프로그램’은 호주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 절차를 밟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역외 정착 프로그램’에는 UNHCR의 공식적인 난민자격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않지만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난민 관련 단체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난민지위를 신청한 경우나, 특별한 인도적 긴급 구호가 필요한 사람이나 위기에 처한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인도주의 프로그램(Special Humanitarian Program, SHP)도 포함된다. SHP 난민 지위를 획득한 사람 중에는 고국에 남아 있는 직계 가족들을 호주로 초청해서 가족재결합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제공받는 경우도 있다. 호주에서 난민 지위의 획득은 곧 영주권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지역별 인도주의의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발급된 비자, 2008~2013

(단위: 명(%))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아시아 (동남·중앙)	북아프리카와 중동	기타
2008~2009	2743 (25.2)	4322 (39.7)	3784 (34.8)	26 (0.2)
2009~2010	2347 (25.5)	4571 (49.6)	2248 (24.4)	41 (0.4)
2010~2011	1974 (22.1)	4203 (47.0)	2741 (30.7)	23 (0.3)
2011~2012	1326 (19.8)	3488 (52.0)	1861 (27.8)	31 (0.5)
2012~2013	1421 (11.4)	6034 (48.2)	5038 (40.3)	22 (0.2)

자료: DIAC, 2014. “Australia's Offshore Humanitarian Program: 2012-2013.”

위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비자가 발급된 난민 출신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부탄, 콩고 등의 국가이다. 2012~2013의 경우에는, 이라크가 4064명으로 전체의 32.5%, 아프간 2431명으로 19.4%, 미얀마 2352명으로 18.8%, 부탄 1023명으로 8.2%, 콩고 489명으로 3.9%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아시아 출신 난민지위 신청자에게 비자를 제공하는 사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호주 역내로 진입한 이민자 중에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유입되는 국제 인신매매의 피해자들도 포함된다. 인신매매에 관한 통계를 살펴보면, 2004~2013년 동안에 호주연방경찰에 조사 의뢰된 인신매매 사건 수가 398건에 달했다(Human Trafficking Working Group, 2014). 최근 몇 년 사이(2008년 이후부터)에는 그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07년의 경우에는 17건에서, 2008년에 38건으로, 작년 2013년에는 52건으로 늘어났다. 또한 2004년 이후 약 200명의 인신매매 피해자가 정부 지원을 받았다. 피해자의 성비를 살펴보면, 2012년 6월 기준 총 193명의 피해자 중에 여성이 174명이었고 남성이 19명으로 여성 피해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 출신국 중에는 태국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국, 말레이시아 순이었다. 하지만 호주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NGOs에 따르면, 호주정부의 공식 발표보다 지원 받은 피해자 수가 50% 이상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들은 또한 매해 호주로 유입되는 인신매매 피해자 수가 천명을 넘는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호주정부는 NGOs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불법 체류 노동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2013년 6월 기준 약 62,700명에 달했다. 그 중 85%는 15~65세 사이의 노동가능 인구이었으며, 그들 대부분은 농업, 어업, 산림업, 숙박 및 음식업, 건설업 종사자이다. 2007년부터 호주정부는 불법체류 근로자를 고용하는 행위를 범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2013년 6월에는 불법체류자를 은닉해주는 시민에게도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들 대다수는 불법적 경로를 통해 호주로 입국했다기보다는,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체류허용 기간을 넘긴 미등록 이민자들이다.

IV. 호주의 난민과 비호신청자 문제와 정부의 대응

호주는 1950년에 UNHCR 설립에 적극 앞장섰으며 1951년 유엔난민협약을 6번째로 비준하고 3년 후인 1954년에 범집행을 할 만큼 국제 난민 이슈에 관심을 보여 왔다. 호주의 난민 유입사를 살펴보면, 1970년대 초반까지 호주에 유입된 난민은 주로 유럽 출신이었다(Refugee Council of Australia, 2014). 하지만 1975년부터 아시아 출신 난민들이 본격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당시에 베트남 난민 백만 명과 함께, 적은 수이긴 하지만 캄보디아와 라오스 출신 난민 일부가 수용되기도 했다. 한편 ‘보트’를 타고 해상으로 들어오는 인도차이나 국가 출신의 난민 수가 급증함에 따라 호주정부는 1979년부터 역외 난민정책 도입을 통해 비호신청자를 선별해서 수용하기 시작했다. 이 정책은 정부 관료가 UNHCR 담당자와 함께 난민수용소를 방문해서 호주 정착에 성공할만한 조건(주로 젊고 건강한, 교육 수준이 높고 가족 관계가 안정되어 있는 등)을 갖춘 사람들을 선별해서 영주권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어서 1981년에는 이란 출신 난민들이 대거 발생함에 SHP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SHP 프로그램은 1989년에 중국의 천안문 사태와 구소련연방의 붕괴로 인해 대규모의 비호신청자가 호주로 들어오길 희망하면서 한계에 직면했다. 당시 과도한 난민 수용에 대한 호주 사회의 불안이 확산되면서, 호주정부는 이민법 개정을 통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호주로 들어온 이민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추방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호주정부는 1991년 들어 비자 없이 호주에 머무는 불법체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강제구금소를 개소했으며, 같은 해 호주 의회는 강제구금소에 불법체류자가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을 최대 273일까지 허용했다. 또한 체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법안이 채택되었다. 하지만 강제 구금 기간에 제약을 두는 부분이 지속적인 논쟁 쟁점이 되자, 1994년에 호주 의회는 273일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기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으며, 이후 1997년에는 이민자 강제 구금소의 운영을 민영화시키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강제구금소의 운영이 민간업자의 손에 넘어감으로서 구금된 이민자의 체류비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1990년 후반부터 호주의 난민 정책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는데, 이는 당시에 호주로 진입하려는 ‘보트 피플’의 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1999년의 경우, 86척의 선박에 총 3,721명이, 이후 2000년과 2001년 사이에는 94척의 선박에 총 8,845명의 ‘보트 피플’이 비호 신청을 요청하며 호주 진입을 시도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보트 피플’의 증가로 인해 국경 관리와 난민 수용 문제가 호주사회 전역에 논쟁적인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구체적으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과 난민지원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난민의 권리 보호라는 가치와 충돌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더욱이 당시 연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는 난민보호 보다는 안보와 경제적 비용 최소화를 정책 우선순위에 둔 보수연합 정부의 주장이 더욱더 대중적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문경희, 2008: 283). 이와 함께, 2001년 8월에는 보수연합 정부의 ‘반난민’ 정치에 힘이 실리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아래에서 설명되는 ‘탐파 위기’(Tampa Crisis)가 바로 그것이다.

1. 국가 안보 담론을 활용한 보수연합정부의 반난민 정치(1997-2007)

‘탐파 위기’는 2001년 8월에 아프간 비호신청자 439명을 태운 20미터의 인도네시아 선박이 호주 크리스마스 섬(서부호주 퍼스로부터 서북쪽 2700Km 호주 최북단 영토) 근처에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촉발되었다. 당시 그 지역을 지나던 노르웨이 화물선 탐파(Tampa) 선이 이들을 구해서 호주에 들어가기를 요청했으나 호주정부는 이를 강력히 거절 했다. 호주정부는 당시 침몰하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불법이민자’로 간주하고, 이민법 개정을 통해 합법적 승인 없이 호주 해상지역에 들어와서 난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호주정부는 해상으로 진입한 비호신청자들을 인근 태평양 섬(구체적으로, 파푸아뉴기니(PNG)와 나우루공화국)에 설치된 강제구금소에 머무르게 하는 ‘태평양 해법’(Pacific Solution)을 발표했다(Refugee Council of Australia, 2014). 뿐만 아니라, 이때 호주정부는 호주 해상에 접근한 선박에 대해 무력을 통해 강제 추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경보호법안(The Border Protection Bill)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에 아프간 난민을 태운 또 다른 선박인 SIEV X가 호주 인근 해상에서 호주 진입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하는 사건이 발생

했다. 이때에도 하워드(Howard) 보수연합 정부는 선상에서 아프간 남성들이 영아를 바다로 던져 죽였다는 소식을 언론과 방송을 통해 대대적으로 전파하면서, 국가 안보와 사회 불안 등을 이유로 반난민 정책을 고수해나갔다. 이후 이 배가 수중으로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146명의 아동과 142명의 여성, 65명의 남성이 물에 빠져 사망했고, 44명만이 인도네시아 어선에 의해 구조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호주정부의 비호신청자 거부 정책은 호주사회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 이듬 해 초에 보수연합 정부는 아프간 비호신청자 2000명의 난민신청을 동결시켜버렸다. 당시 합법적인 난민자격 취득을 목표로 강제구금소에서 장기 체류하고 있던 아프간인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이었다. 결과적으로, 당시 체류자 대다수는 호주정부의 반아프간 난민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단식투쟁과 함께 입을 실로 꿰매는 등의 침묵시위를 이어나갔다. 위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호주의 비호신청자 정책은 국제사회로부터 더 많은 관심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아프간 비호신청자의 선상 아동유기 사건이 연방선거 승리 당시 하워드 정부가 조작해서 발표한 사실임이 공식적으로 드러나면서 호주정부의 반인권적이고 거짓으로 일관된 비호신청자 관리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파만파 확산되었다(문경희, 2008: 284). 이와 더불어 호주 영토 밖에서 운영되고 있는 강제구금소의 운영비가 과도하게 지출되어 호주인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비호신청자 처리에 대한 새로운 정책 해법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2. 초국적 불법인신매매 및 밀입국 담론을 활용한 대 노동당의 난민 정책 (2008~2013)

2007년 말에 집권을 시작한 노동당 케빈러드(Kevin Rudd) 정부는 전 정부의 ‘태평양 해법’을 공식적으로 폐지하면서, 태평양 인근 섬에 지어진 강제구금소를 폐쇄하기 시작했다. 앞서 보수연합 정부가 비호신청자들에 대한 글로벌 테러리즘(global terrorism)과 연계 가능성을 강조하며 국가 안보와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범법자로 인식했다. 반면에 케빈러드 수상은 비호신청자들을 초국적 인신매매 피해

자나 밀입국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으로 간주하며, 그들의 문제를 초국적 인신매매와 밀입국 문제로 전환시켜 해결하고자 시도했다(Cameron, 2013: 245-247). 즉, 그동안 보수연합 정부가 그들의 문제를 국가 안보와 연계해서 독단적으로 다루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초래한 반면, 노동당 정부는 같은 문제를 초국적 인신매매와 밀입국과 같은 범법 문제로 다루면서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러드 노동당 정부는 호주가 반인권·반난민국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에서 벗어나고자 했으며, 또한 오랜 기간 자국의 ‘골칫거리’였던 비호신청자 문제를 국제사회의 문제로 전이시켰다. 결과적으로, 당시 호주정부는 비호신청자들을 불법 인신매매의 피해자이거나 밀입국자로 간주하며, 그들의 안전과 국내외 법치주의 질서 유지를 위해 자국으로 반드시 돌려보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호주정부는 자국의 비호신청자 관리가 유엔난민협약을 위반하기보다는 ‘이민자 밀입국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적 알렸다(Cameron, 2013: 256). 이런 맥락에서, 호주정부는 불법 밀입국자 문제를 지역 협력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설립된 발리 프로세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러드 수상 이후 정권을 이어받은 노동당 줄리아 길라드(Julia Gillard) 수상의 집권 시기에 스리랑카, 아프간, 이라크에서 호주로 밀입국하려는 비호신청자 수가 급증하면서 국내 강제구금소 부족 문제와 그들의 수용 문제가 다시금 정책의 대상이 되었다. 더욱이 구금소 내 반인권적 대우와 난민자격 획득에 실패한 사람들의 호주 정부에 대한 폭력적 시위가 이어지면서 국내 여론이 악화되자, 길라드 수상은 비호신청자 문제의 해결법을 다시 해외에서 찾고자 시도했다. 길라드 수상은 비호신청자 문제의 발단을 인신매매나 밀입국 거래가 이뤄지는 송출국이나 경유국의 문제로 인식했다. 따라서 애초에 그러한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경찰 단속과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노력을 집중시키기 시작했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 5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한편, 해외 구금소 운영 문제와 관련해서 길라드 수상은 비호신청자들이 주로 인접 아시아국을 경유해서 유입된다는 점에서 2011년에 말레이시아 정부와 난민 맞교환 협정을 맺었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호주 해상으로 유입된 800명의 난민을 말레이시아로 송환하고, 대신에 말레이시아 난민 구금소에서 UNHCR을 통해 난민자격을 인정받

고 제 3국으로 재정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4,000명의 난민지위 획득자를 호주에서 향후 4년에 걸쳐 쿼터 난민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Wood and Acadam, 2012: 274).

이를 통해 길라드 정부도 국제적으로 난민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호의적으로 대하지만, 반면에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해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등 경유국을 통해 호주 영내로 진입한 ‘보트 피플’에 대해서는 ‘인신매매 및 밀입국 알선업자’에 의해 조장되는 ‘불법행위자’로 간주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했다. 호주 정부는 이 협정에 대해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적 책임과 협력의 원칙이 작동한 (양국 간의) 진정한 부담 공유를 약속’한 것이라고 언급했다(Wood and Acadam, 2012). 하지만 이 협정이 발표된 이후 난민과 인권 옹호 단체들은 일제히 대중들을 속이는 ‘인권 재앙적인’ 협정을 철폐할 것을 호주정부에게 요청했다. 그들의 주장은 그동안 말레이시아 정부가 제공한 난민 구금소가 반인권적으로 운영되었고, 난민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늘 있어왔다는 사실에 토대를 둔 것이었다.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된 이 사건은 호주 연방대법원이 호주-말레이시아 난민 맞교환 정책이 위법이라고 판결 내림으로서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의 판결은 UN 난민협약에 가입조차 하지 않은 말레이시아가 난민 심사와 보호를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로서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러한 연방 대법원 판결은 국제인권 및 난민 레짐과 함께 국내외 법치주의 및 삼권분립 체제가 호주정부의 난민정책 형성에 일정 부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길라드 정부는 과거 보수연합 정권의 ‘태평양 해법’을 비난했지만, 결국 그 이름과 지리적 위치만 바꾼 ‘맞교환’ 협정을 통해 자국의 난민 문제를 국제협력이라는 명분하에 해결하려 한다는 국내외 비난을 면치 못했다.

이후 국내에서는 난민 강제 구금소의 열악한 인권침해 실태로 인해 구금자들의 연이은 시위가 이어졌고, 또한 재정적자 확대에 난민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호주인들의 불만도 커져 갔다. 이에 길라드 노동당 정부는 과거 보수연합 정부의 ‘태평양 해법’과 유사한 ‘PNG 해법’을 제안했다. 내용인 즉 파푸아뉴기니 마누스 섬과 나루루 지역에 호주의 역외 구금소를 확대 설치하고 호주를 찾는 비호신청자들을 일단 구금해서 난민 신청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위 두 국가는

모두 UN 난민협약 서명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또한 호주정부는 그동안 매해 약 13,000명에게 발급했던 난민비자를 확대해서 20,000에게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난민과 비호신청자에 대한 외부자문단의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2012년 11월부터 PNG의 마누섬에 이동을 동반한 비호신청자 위주로 이주를 시작되었다(Australian Government, 2012b). 하지만 호주로 진입한 해상 보트 비호신청자 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마누스섬으로 이동시킬 수는 없다는 점에서, 호주정부는 이동을 동반한 비호신청자 가족들에게 브리징(bridging) 비자를 발급해서 호주의 지역공동체가 운영하는 구금소 또는 쉼터에 거주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 마누스섬으로 옮겨간 비호신청자보다 더욱더 유리한 난민 자격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UNHCR을 비롯한 국내외 난민보호 기구와 단체들은 호주의 역외 난민 구금소 시설이 매우 열악해서 인권 침해적인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Garnier, 2013: 952). 뿐만 아니라, 안보(안전)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구금자를 무기한 감금하며 적절한 법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호주정부가 UN 난민협약의 제 7조와 9조 항목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3. 보수정권의 초강경 난민정책 (2013~현재)

결국 현재 호주의 난민정책은 2013년 9월에 정권 탈환에 성공한 자유당의 토니 애벗(Tony Abbott) 수상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과거 하워드 수상보다 더욱 강경한 보수파인 애벗 수상은 해상 난민 문제에 대해 해상 난민을 일절 호주 땅에 들이지 않겠다는 초강경 난민정책을 채택했는데, 그 결과 해상으로 호주 유입을 시도한 모든 사람들이 PNG와 나우르에 강제 구금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애벗 수상의 정책은 과거 하워드 보수연합 정부의 국가 안보를 중심으로 한 반난민 정책에다가 노동당 정부의 불법 밀입국자 정책까지 더해져 더욱 강경해졌으며, 이는 호주사회에 더 큰 난민 문제의 불씨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Cameron, 2013: 247). 예를 들어, 2014년 2월에는 마누스섬 강제구금소에서 대규모의 폭동이 일어나 약 8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다(The Guardian, February 19, 2014). 이러한 난민 폭동과 시위가 이후에도 연속적으로 일어나며 사상자와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현재 애벗 정부의 난민 정책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 특히 중국까지 나서서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비판에 직면한 애벗 정부는 올해 4월에 유엔난민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캄보디아에 난민 구금소 이전을 요청했고, 이에 캄보디아 정부가 협정을 맺기로 의사를 밝혔다(The Sydney Morning Herald, April 30, 2014).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의 난민 보호 능력과 의지가 말레이시아 협정 때처럼 다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양국의 난민 협력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고 볼 수 있다.

4. 소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주의 난민·비호신청자 관리 정책은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그 성격이 달라지며, 또한 그것이 어느 정도 국제 인권 및 난민 규범에 부합하느냐 여부에 따라 채택되기도, 거부되기도 한다. 이는 과거처럼 외국인에 대한 국경 통제 권한이 전적으로 주권 국가에 위임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국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글로벌 거버넌스, 즉 국제 인권 및 난민 레짐과 법치주의 규범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9.11 이후 등장한 '테러와의 전쟁'과 국가 안보 관점에서의 난민 담론이나, 초국적 인신매매 및 밀입국 담론에 기반한 담론이나 그 성격은 다르지만, 난민 문제를 초국적 범죄와 연계해서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책임을 국가사회 전체로 전이시켰다. 이에 대해, 카메론(Cameron)은 호주정부가 난민·비호신청자 관리 문제를 테러나 인신매매, 밀입국과 연계한 초국적 범죄와 연계함으로써 정책의 초점을 인권과 난민의 권리 보호보다는 그들에 대한 단속 및 처벌, 송환 등으로 전이한 대표적인 '정책 세탁'(policy laundering)의 일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맥락에서, 다음 장에서 호주정부의 발리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한 지역협력, 또한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주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양자협력에 대해 논의한다.

V. ‘불법이민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호주의 대아시아 지역 협력 현황

1. 발리 프로세스(Bali Process on People Smuggling, Trafficking in Persons and Related Transnational Crime, the Bali Process)

앞서 살펴보았듯이, 2000년대 초반에 ‘탐파위기’ 및 일련의 ‘보트 피플’ 사건을 겪으며 호주정부는 인도네시아나 다른 아시아 인접 이웃 국가를 경유해서 호주 해상으로 들어오려고 시도하는 밀입국자들과 싸우고, 불법 밀입국선의 영내 진입을 막기 위해 호주정부는 아시아 여러 국가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2002년 2월에 호주와 인도네시아 정부는 발리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급증하고 있는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해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당시 38개국 장관들과 IOM 및 UNHCR의 대표가 참석한 이 회의가 바로 발리프로세스의 시초가 되었다. 이때 다른 15개국과 여러 국제 및 지역 기구들도 이 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대표단을 보냈다. 발리프로세스의 길을 닦았다고 할 수 있는 이 회의에서 세 가지 사안이 주요하게 논의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⁶⁾

- 1)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불법적인 인구 이동이 복잡한 양상으로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고, 이는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안보 차원의 도전 과제를 만들어내고 있음. 특히 밀입국과 인신매매 조직과 글로벌 테러범들 간의 연계 가능성이 ‘심각한 우려’를 자아냄
- 2) 이민자 밀입국과 인신매매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지만, 그런 일을 주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금전적 이득을 가져다주는 비난받아 마땅한 범죄행위와 같음
- 3) 참석자들 모두 각 국의 국제적 협약 가입에 따른 의무준수 사항과 국가 개별적 상황을 고려해서 밀입국과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자발적으로 지역협력에 동참하기로 함

6) 발리 프로세스 공식 홈페이지 (www.baliprocess.net)

‘Bali I’이라고 불린 이 회의에서는 회의 때 제안된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한 애드 혹 전문가 회의를 차후에 조직해서 운영하기로 하고, 일 년 후에 다시 만나서 그 성과를 논의하기로 했다. 당시 ‘Bali I’이 난민 및 탈구된(displaced) 사람, 이민에 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협의체(APC)와 ASEAN 등의 지역 기구나 회의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2003년 4월에 ‘Bali II’ 회의가 열렸고, ‘Bali I’ 회의의 성과에 대한 회의적인 논의와 함께 다시 APC에 통합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독립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결정되었다. 한편, ‘Bali I’과 ‘Bali II’ 회의에서 만들어진 조직 구조가 현재의 발리 프로세스에 현행 유지되고 있으며, 회원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 43개 국가로 확대됨과 동시에, 일부 유럽과 북미 국가와 여러 국제기구들이 참관 자격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⁷⁾ 발리 프로세스의 운영비는 주로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에는 지역 내 밀입국 시도가 감소하자 발리 프로세스의 중요성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08년 이후부터 호주 해상을 중심으로 밀입국 시도를 위한 선박 출몰이 증가하자 호주 노동당 정부는 2009년에 발리 3차 회의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다음은 발리 프로세스의 10가지 목적을 정리한 것이다.

- 1) 더욱더 효과적인 정보와 지식 공유 시스템 개발
- 2) 밀입국과 인신매매 연루 조직의 네트워크에 대항해서 싸우고 해체시키기 위한 지역 내 경찰들 간의 협력 증진
- 3) 불법 이주를 막기 위한 국경 및 비자 시스템을 위한 협력 증진
- 4) 불법 이주를 감소시키고, 그것을 시도하려는 사람/조직에게 경고하기 위한 대중적 인식 확산
- 5) 밀입국자와 인신매매 희생자를 적절한 조치에 따라 모국으로 잘 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적인 전략 개발

7) 43개 회원국: 아프카니스탄, 호주, 방글라데시, 부탄, 부르나이, 캄보디아, 중국, 북한, 피지, 프랑스(뉴칼레도니아),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일본, 요르단, 키리바티,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고, 미얀마, 나루우, 네팔, 뉴질랜드, 파키스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아, 필리핀, 대한민국, 사모아, 싱가포르, 솔로몬아일랜드, 스리랑카, 시리아, 태국, 동티모르, 통가, 터키, 아랍에미레이트, 미국, 바누아투, 베트남

참여국제기구: IOM, UNHCR, UNODC (출처: 발리 프로세스 공식 홈페이지, www.baliprocess.net)

- 6)불법 이주와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국적과 인적 배경 파악을 위한 협력
- 7)밀입국자와 인신매매자들을 범죄화하기 위한 국가적 법제 시행
- 8)인신매매 피해자,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지원 제공
- 9)국가 간 합법적 이주 기회를 증진시킴으로서 불법 이주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려는 노력 증진
- 10)유엔난민협약에 따라 각 국가들이 비호신청자 관리에 있어서 모범 관행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

호주사회에서 발리 프로세스는 명목상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는 호주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발리 프로세스가 자국의 밀입국을 막기 위한 매우 성공적인 지역협의체라고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자국이 주도하는 지역 협의체라는 점에 대한 강조와 함께 상당한 액수의 정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2011-2012년 불법 이민자의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관리 예산으로 총 23.8백만 달러를 책정했고, 그 중 9백만 달러를 발리 프로세스를 위해 투자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권의 입장과는 달리 발리 프로세스는 실제 지역 내 영향력 있는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이민 등 다양한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 수단으로 지역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이나, 발리 프로세스는 1)회의가 부정기적으로 개최된다는 점 2)독립된 사무국이 따로 없어 운영상의 한계를 가진다는 점 3)협의 내용에 대한 실천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 등이 비판받고 있다. 이와 함께, 발리 프로세스의 태생적 문제점과 운영 상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Human Trafficking Working Group, 2014).

- 1)인신매매와 밀입국을 막기 위한 법제와 국경통제, 관리에 대한 초점이 집중. 하지만 난민보호와 인권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거의 없음.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일부 회원국들은 유엔난민협약과 프로토콜 등에 서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난민 보호와 인권에 대한 국제적 의무사항을 지켜야 할 강제성을 갖지 않음
- 2)협의체에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부재함. 이민자 중심의 사고, 관점이 부재함. 때문에 밀입국과 인신매매 등의 근본 원인을 찾아 문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
- 3)호주 등 일부 국가의 이익 추구에만 집중함. 호주해상에 밀입국선의 등장이 많아진 2008년 이후부터 호주정부는 인근 국가들에 난민 구금 및 신청 및 평가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는 지역가공센터를 동티모르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음. 이는 RFA에 의해 지지받았으나 불가되었음. 이후 말레이시아와 난민 맞교환 논의가 있었으나 호주 대법원의 불가 판결내림. 이는 호주정부가 발리 프로세스를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함. 일개 회원국가가 발리 프로세스의 운영에 지나친 영향을 미칠 때, 책무성과 투명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

- 4)레토릭(rhetoric)과 지역주의: 호주 정치공동체는 발리 프로세스에 대한 긍정적 역할과 기능에 대해 높게 평가했음. 그러나 2008년 이후 난민선박 수가 증가함에 따라 호주정부의 미사여구가 줄어들. 일부에서는 국제 불법이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불법이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호주정부의 발리 프로세스에 대한 기대가 매우 순진하다고 판단함. 이는 2011년 지역 내 난민구급센터 설치에 대한 제안에 다른 국가들이 크게 호응하지 않았던 점과 일맥상통함
- 5)지역중심의 유사한 협의체가 다수 존재함

이상과 같이 발리 프로세스는 호주정부의 필요에 의해, 또한 호주정부의 주도 하에 자국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전개되는 측면 때문에 다른 회원국들의 관심이나 참여 수준이 호주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거버넌스 행위자 측면에서 실제 이민자들을 현장에서 만나는 민간의 참여가 부재하다는 점과, 비호신청자들의 권리 보호에 대한 관심이 낮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발리 프로세스 운영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난민 협력에 있어서, 각 회원국들 간에 동일한 문제인식과 함께, ‘보트 피플’ 또는 역외에서 비호신청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며, 누가 거버넌스에 참여해서, 어떤 합리적인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2. 호주-아시아 인신매매 근절 프로그램(The Australia-Asia Program to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발리 프로세스 이외에도 호주정부는 2003년부터 자체적으로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 to Eradicate Trafficking in Persons)을 도입함과 동시에 전정부적 전략 수립을 통해 인신매매 전 과정에 걸친 영역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2012). 또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호주원조청(AusAID)을

통해 2003~2006년 동안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지역협력’(the Asia Regional Cooperation to Prevent People Trafficking, ARCPPT)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이후 이는 ‘아시아 지역 인신매매 프로젝트’(the Asia Regional Trafficking in Persons Project, ARTIP)로 바뀌었으며, 호주 정부는 이를 2006~2012년까지 지원했다. 위 10년 동안 호주정부가 투자한 예산은 50 million 달러에 이른다. 이어서 호주정부는 2013~2018년 기간 동안에 ‘호주-아시아 인신매매 근절 프로그램’(the Australia Asia Programme to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AAPTIP) 운영을 약속했고, 그것을 위해 50 million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골자는 아세안 국가들의 사법당국 지원을 통해 인신매매를 근절하는 것이며, 아세안 국가 중 호주의 원조 지원국이 아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는 제외된다.

AAPTIP 또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호주정부가 비호신청자나 불법 입국자에 대한 인권이나 난민권에 대한 보호보다는 국제 사법공조체제를 통해 그들의 존재 자체를 출현 단계부터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다. 그동안 사업 지원을 통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3Ps, 즉 예방, 처벌, 보호(Prevention, Prosecution, Protection)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현재 아세안 국가와 지역기구의 사법정의 체제가 효과적으로 구축되어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호주정부는 AAPTIP를 통해 특히 처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점에서 AAPTIP의 목적은 아세안 지역에서 인신매매를 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와 기회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때 인센티브는 ‘누군가가 인신매매 범죄를 범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회는 ‘범죄자가 인신매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호의적인 또는 이로운 상황’을 의미한다. 잠재적인 범죄자에게는 처벌을 주는, 그리고 희생자에게는 피해를 밝히고, 보상받을 수 있는, 즉 효과적으로 법적 정의가 구현될 수 체제를 만든다면 인신매매는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호주정부의 판단이다. AAPTIP의 지역적 목표와 국가적 목표는 각각 다음과 같다.

- 지역적 목표:

- ① 인신매매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법정의 실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강화
- ② 인신매매 사건들에 대한 지역 차원의 수사 및 법적 공조를 강화

③ 정책 개발과 의사결정을 위한 증거 기반(evidence base) 확장

- 국가적 목표:

- ① 인신매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검찰 기능 강화
- ② 인신매매 사건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함
- ③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 전 과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④ 인신매매 사건이 효과적이고 즉각 반응하는 방식으로 수사될 수 있도록 함

AAPTIP 운영 방식은 첫째, 지역 차원에서 다른 파트너 시스템(ASEC, SOMTIC, TIP WG, HSU)을 활용하는 것이다.⁸⁾ 두 번째 운영 방식은 개별 국가 차원에서 각 국가의 TWG(Technical Working Group)에 의해 개발된 연간 계획을 지원하는 것이다. 예산 배분은 전체 원조금의 44%를 전문가 및 직원 인건비 및 여비, 45%를 훈련 및 워크숍, 지역적 정보공유 행사 및 파트너 기관들의 연간 계획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인센티브 등, 6%를 모니터링과 평가비, 나머지 5%를 프로젝트 계획 및 관리를 위한 회의비 및 사무·행정 운영비로 지출할 계획이다. 한편, AAPTIP의 거점 사무소는 방콕에 위치한 호주외무부의 동아시아 지역사무소를 이용하며, 이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에 국가 사무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AAPTIP 운영은 국제 원조효과성 원칙과 지역 및 국가 시스템과 연계되어 운영될 것이며, 이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은 정기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3. 호주와 아시아 국가 간 양자 협력

인도네시아는 호주와 가장 긴밀하게 불법이민 및 난민 문제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국가이다. 호주정부는 지리적으로 자국과 가장 근접한 아시아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이민뿐 아니라 무역, 반테러리즘, 투자, 원조, 문화적 교류 분야 등에서 왕성한 정부 대 정부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유엔난민협

8) ASEC: Secretariat of the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 SOMTIC: Senior Officials Meeting on Transnational Organised Crimes

· TIP WG: Trafficking in Persons Working Group

· HSU: Heads of Specialist Anti-Trafficking Units

약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1979년 이래로 UNHCR의 지역 사무소 개소 및 활동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 망명을 꿈꾸는 상당수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 먼저 입국해서 UNHCR의 난민 선정절차를 거치며 호주로 유입되길 기다리는 난민 중간 정착지이다.⁹⁾ 인도네시아를 경유하는 상당수 난민들은 구금소에 머물며 호주정부의 입국 허가를 대체로 기다리는 편이었지만, 최근 신청자 급증과 거부로 인해 기다리는 기간이 늘어난 결과 인도네시아의 밀입국선 알선자들을 통해 해상 밀입국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Nethery and Gordyn, 2013: 185). 때문에 호주정부는 인도네시아의 국경통제 및 불법 밀입국선 단속에 지대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호주정부는 앞서 소개한 발리 프로세스와 AAPTIP, RCF와 같은 지역 협력체에서 인도네시아가 협력의 주요 파트너국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당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호주정부는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 및 비호신청자들이 구금소 생활에 불만족스러울 때 밀입국선을 찾을 확률이 높다는 전제 하에 인도네시아의 구금소 환경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과 함께 구금소 운영을 위한 일부 비용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Nethery and Gordyn, 2013: 186)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호주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양자 협력을 통해 난민 및 비호신청자, 불법 밀입국자에 대한 부담을 상호 공유하고 전이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호주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오랜 기간 재정적 지원 및 경제적·외교적 인센티브를 부여한 결과 호주의 이민법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이민법을 개정하는데 성공했다. 2011년에 개정된 인도네시아의 이민법에는 호주의 이민법에 포함된 이민자 구금소 운영 조항, 반인신매매 및 밀입국 관련 조항, 또한 특정 외국인에 대한 입국 거부 및 추방 등이 포함되었다. 심지어 새롭게 도입된 법에 사용된 용어 또한 호주정부가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Nethery and Gordyn, 2013: 187). 원조 프로그램 및 다양한 경제적, 외교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민정책 협력을 이끌어낸 호주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한편에서는 효과적으로 불법이민자 문제가 해결

9) 인도네시아 정부가 허용하는 난민 및 비호신청자의 국내 체류 기간은 9년이며, 구금소는 전국적으로 총 14개를 개소하고 있다.

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유엔난민협약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많은 비호신청자들의 호주 유입이 차단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호주의 양자 이민협력 사례는 아래와 같다.¹⁰⁾

- 인신매매와 밀입국 관련 말레이시아-호주 워킹 그룹: 국경관리, 법적 협력, 해상 감시와 차단, 법집행과 정보 공유 등. 고위 공무원들이 이민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니셔티브에 관해 논의함
- 국경관리와 초국적 범죄 관련 파키스탄-호주 조인트 워킹그룹: 국경 관리, 법집행 협력, 법적 이슈 등에 초점을 맞추, 기술지원 분야를 결정하기도 함
- 이민협력을 위한 호주-인도네시아 워킹그룹: 인신매매에 대항하기 위한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이행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호주 양국에 원조 운영에 대한 조율과 양자협력에 대한 공동의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추가적인 기구를 설립하게함
- 아프가니스탄-호주 고위급 회담: 이민 관리와 인도주의적 협력을 위해 체결된 양해각서 이행과 결과 논의를 위해 만들어졌음
- 비자와 여권 및 영사 업무 관련 인도-호주 조인트 워킹그룹
- 중국(공공안전부처)-호주(DIAC)간 고위 관료 교환 프로그램: 양국 간 이민이슈 논의
- 이라크-호주 고위급 회담: 안보와 국경 통제에 관한 MOU 하에 이슈 논의
- 캄보디아-호주 이민 포럼: 인신매매 및 불법 이민에 대항하기 위한 양국 상호 협력 MOU하에 양국간 협력체 구축
- 호주-PNG 장관급 이민 포럼
- 호주-뉴질랜드 TTTA: 양국 시민들이 비자 없이 상대국을 오갈 수 있으며, 시간 제약 없이 체류할 수 있음. 또한 특별카테고리비자(SCV) 하에 뉴질랜드 시민들은 호주로 들어갈 수 있으나 임시 체류만 허가함. 이는 타스만 지역의 여행과 노동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음. 이는 양국 이민협력이라기 보다는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제안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

10) 호주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 참조(www.dfat.gov.au)

VI. 나가며

본 연구는 호주정부가 변동하는 글로벌 정치, 경제 여건에 대응하여 어떻게 자국의 이민정책 방향과 전략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호주정부는 한편에서는 경제적 혜택이나 난민의 생존권과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해 국제이민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 안보와 사회질서 유지, 이민자에 대한 복지부담 완화를 위해 엄격하게 국경통제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 내 여러 국가들과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서 논의했듯이, 각 국가들은 최근 공식적인 글로벌 이민 거버넌스 도출에 관심이 있으나, 실제 그것을 위한 노력보다는 이민협력의 세 가지 주요 목표(경제, 안보, 권리)를 달성하기에 각국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이민 협력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도, 기술이민과 같은 영주이민자 수용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이민 거버넌스를 채택하고 있으며, 글로벌 난민 보호차원에서 유엔 차원의 다자적 난민협약을 따르기도 한다. 하지만 ‘보트 피플’과 같이 난민선을 타고 호주에 진입하려는 비호신청자나 불법이민자 또는 인신매매 피해자 등의 자국 유입 및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주정부는 양자 및 지역내 다자 협력 거버넌스 레짐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보트 피플’ 처리 문제에 있어서는 자국의 문제를 타국가로 이전해서 해결하려 한다는 점, 특히 강제구금소 내 반인권적인 처우와 비호의적인 비자 심사 등은 체류자들 뿐 아니라 호주사회 및 국제사회 구성원들도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유엔난민협약에 서명을 하지 않은 일부 아세안 국가들과 난민 문제 해결을 시도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이유로 난민의 권리 보호라는 명분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한편, 호주정부는 발리 프로세스와 같은 지역 이민협의체를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지나친 자국 중심의 운영 방식과 비정기적인 회담, 또한 사무국의 부재 등이 효과적인 운영을 막는 장애 요인으로 지적된다. 더욱이 협의 과정에 이주민 관련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점 또한 주요한 장애 요인이다. 발리 프로세스가 향후 좀 더 효과적인 운영을 통한 결실 도출을 위해서는 위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호주정부는 국가 원조 프로

그램을 통해 아시아 빈곤국의 인신매매단과 밀입국단 단속과 처벌을 위한 사법 질서 강화에 주력하고자 한다. 과거와는 달리 인신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 보다는 경찰 단속과 법적 처벌에 초점을 맞춘 AAPTIP의 전개와 성과 및 한계는 향후 다른 원조 공여국들에게 비호신청자 관리 프레임과 방식과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유형의 이민자들이 대규모로 들고나는 호주사회에서 아시아, 특히 주변 지역의 빈곤국이나 분쟁국 출신의 이민자 입국과 체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더욱이 그들의 이동 경로가 비합법적 또는 비규범적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오랜 기간 인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호주와 아시아의 관계는 정쟁의 대상이었고, 선거의 승리를 결정하는 주요 사안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호주의 이민정책과 국제협력은 호주에게 유리한 이민자와 그렇지 않은 이민자로 양분되어 전개될 것이다.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우방국의 기술이나 자본이 많은 이민자에게는 더욱더 관대하지만, ‘허약국’이나 비호의적인 국가 출신에 호주의 합법적인 비자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민자에 대해서는 권리보다는 처벌을 위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점에서 호주 사례는 앞으로도 유입국들에게 글로벌 차원의 공식적인 다자적 이민협력 거버넌스를 구축이나 난민협약과 같은 기존 권리 중심의 거버넌스 강화와 같은 자발적 노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김철효. 2011. “(호주) 말레이시아 난민 맞교환 정책 위법 판결에 따른, 줄리아 길라드 총리 리더십 위기.” IOM 이민정책연구원. (http://www.iom-mrtc.org/trend/trend02.php?admin_mode=read&no=10478&page=&make=&search=에서 가용. 인터넷: 2014년 5월 10일 접속).
- 문경희·이희진. 2012. “호주 노동당 정부의 중견국 외교에 대한 고찰 : 배경 및 시기별 특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22(2): 195-224.
- 문경희. 2010. “호주의 아시아 관여(engagement) 정치: 국제정치경제 변동과 호주 정당 간의 경쟁적 대아시아 관점.” 《세계지역연구논총》 28(3): 157-184.
- 문경희. 2008. “호주 다문화주의의 정치적 동학: 민족 정체성 형성과 인종문화 갈등.” 《국제정치논총》 48(1): 261-297.
- Adele Garnier. 2013. “Migration Management and Humanitarian Protection: The UNHCR's 'Resettlement Expansionism' and Its Impact on Policy-making in the EU and Australia.”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40(6): 942-959.
- Alan O. Sykes. 2013.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Migration: Theory and Practice.”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80: 315-339.
- Amnesty international. 2014. “Australia and Cambodia should scrap asylum seeker deal.” *Amnesty international*. (Available from <http://www.amnesty.org/en/news/australia-cambodia-scrap-asylum-seeker-deal-2014-05-01> Internet; accessed May 10, 2014).
- 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2012. “Australia-Asia Program to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Australian Government*. (Available from <http://aid.dfat.gov.au/countries/eastasia/regional/Pages/initiative-aaptip.aspx> Internet; accessed May 10, 2014).
- Australian Government. 2012a. “Attachment 6: Australia's International and Regional Engagement on Irregular Movement and International Protection.” *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of Australian Government* (Available from http://expertpanelonasylumseekers.dpmc.gov.au/sites/default/files/report/attachment_6_australia_international_regional_engagement.pdf Internet; Accessed May 10, 2014).
- _____. 2012b. “Report of the Expert Panel on Asylum Seekers.” *Australian Government*. (Available from http://expertpanelonasylumseekers.dpmc.gov.au/sites/default/files/report/expert_panel_on_asylum_seekers_full_report.pdf. Internet; accessed May 10, 2014).
- Australian Government, 2014. “Australia's Offshore Humanitarian Program: 2012-2013.” (Available from http://www.immi.gov.au/media/publications/statistics/immigration-update/australia_offshore_humanitarian_prog_2012-13.pdf Internet; accessed May 2,

- 2014).
- Australian Government. 2013. "Australia's Migration Trends 2011-2012 at a glance." (Available from <http://www.immi.gov.au/media/publications/statistics/immigration-update/australian-migration-trends-2011-12-glance.pdf> Internet; accessed May, 2, 2014).
- Betts, Alexander. 2009. *Protection by Persuas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Refugee Regime*.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Betts, Alexander. 2010. "Global Migration Governance-the Emergence of a New Debate." *Department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University of Oxford*. (Available from <http://www.law.uq.edu.au/documents/humantrafficking/migrant-smuggling/regional-cooperation/Douglas-Schloenhardt-Bali-Process.pdf> Internet; accessed May 10, 2014).
- Betts, Alexander. 2011. *Global Migration Governance*. Oxford: Oxford University.
- Cameron, Matthew. 2013. "From 'Queue Jumpers' to 'Absolute Scum of the Earth': Refugee and Organised Criminal Deviance in Australian Asylum Policy."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s and History* 59(2): 241-259.
- Douglas, H. Joseph and Schloenhardt, Andreas. 2012. "Combatting Migrant Smuggling with Regional Diplomacy: An Examination of the Bali Process."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migrant smuggling working group research paper* pp.1-25 (Available from <http://www.law.uq.edu.au/documents/humantrafficking/migrant-smuggling/regional-cooperation/Douglas-Schloenhardt-Bali-Process.pdf> Internet; accessed from May 10, 2014).
- Geiger, Martin and Pecoud, Antoine. 2010.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Migration Management*. London: Palgrave.
- Hansen, Randall. Koehler, Jobst. and Money, Jeannette. 2011. *Migration, Nation Stat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London: Routledge.
- Human Trafficking Working Group. University of Queensland. 2014. "Statistics and other Data." (Available from <http://www.law.uq.edu.au/human-trafficking-statistics> Internet; accessed May 7, 2014)
- Koslowski, Rey. 2008. "Global Mobility and the Quest for an International Migration Regime." *The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Special Issue -International Migration & Development: Continuing the Dialogue: Legal and Policy Perspectives* 21(1): 103-143.
- Koslowski, Rey. 2011. *Global Mobility Regim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Kunz, Rahel. Lavenex, Sandra. and Panizzon, Marion(eds). 2011. *Multilayered Migration Governance: the Promise of Partnership*. Abingdon and New York: Routledge.
- Nethery, Amy and Gordyn, Carl. 2013. "Australia-Indonesia cooperation on asylum-seekers: a case of 'incentivised policy transfer'."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68(2):

177-193.

- Noll, Gregor. 2003. "Risky Games? A Theoretical Approach to Burden-Sharing in the Asylum Field." *Journal of Refugee Studies* 16(3):236-252.
- Opeskin, Brian. 2012. "Managing International Migration in Australia: Human Rights and the Last Major Redoubt of Unfettered National Sovereignt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6(3): 551-585.
- Papademetriou, G. Demetios. 2011. "The Governance of International Migration: Defining the Potential for Reform in the Next Decade-the sixth plenary meeting of the transatlantic council on migration." Migration Policy Institute. (Available from <http://www.migrationpolicy.org/research/TCM-governance-international-migration-defining> Internet; accessed from May 10, 2014).
- Pittaway, Eileen. 2002. "A brief history of refugee policy in Australia." Motspluriels. (Available from http://motspluriels.arts.uwa.edu.au/MP2102edito1_1.html Internet; accessed May 10, 2014).
- Refugee Council of Australia. 2014. "Timeline of major events in the history of Australia's Refugee and Humanitarian Program." (Available from <http://www.refugeecouncil.org.au/f/rhp-time.php> Internet; accessed May 1, 2014).
- Rother, Stefan. 2013. "Global migration governance without migrants? The nation-state bias in the emerging policies and literature on global migration governance." *Migration Studies* 1(3): 1-9. (Available from <http://migration.oxfordjournals.org/content/1/3/363.full.pdf?keytype=ref&ijkey=pR47bmdI8kouxtk> Internet; accessed May 10, 2014).
- The Guardian. 2014. "Manus Island: One dead, 77 injured and person shot in buttock at Australian asylum centre." *The Guardian World news*, February 19, 2014. (Available from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4/feb/18/manus-island-unrest-one-dead-dozens-injured-and-man-shot-in-buttock> Internet; accessed May 21, 2014).
- The Sydney Morning Herald. 2014. "Cambodia agrees 'in principle' to resettle asylum seekers bound for Australia." *The Sydney Morning Herald Political News*, April 30, 2014. (Available from <http://www.smh.com.au/federal-politics/political-news/cambodia-agrees-in-principle-to-resettle-asylum-seekers-bound-for-australia-20140430-zr1jz.html#ixzz32oSACPbd> Internet; accessed May 20, 2014).
- West, John. 2014. "Asian migration to Australia." Asian Century Institute. (Available from <http://www.asiancenturyinstitute.com/migration/214-asian-migration-to-australia> Internet; accessed from May 10, 2014).
- Wood, Tamara and Acadam, Jane. 2012. "Australian Asylum Policy All At Sea: An analysis of plaintiff M70/2011 V Minister for Immigration and Citizenship and the Australia-Malaysia Arrangement."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61(1): 274-300.

호주이민청 홈페이지(<http://www.immi.gov.au>)

호주외교부 홈페이지(<http://www.dfat.gov.au>)

발리 프로세스 홈페이지(www.baliprocess.net)

(2015. 3. 7. 접수; 2015. 4. 30. 수정; 2015. 5. 15. 채택)

Australia's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Migration with Asia: Focusing on the Issues of Asylum Seekers

Kyoung-hee Moon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shifted its migration policies and strategies in response to the changing conditions of global politics and economy. By looking into the Australian case,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building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regime on migration at a global level. The four questions rais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why most of the countries in the world pay little attention to building a governance of global cooperation regime on migration, especially dealing with the issues of refugees and asylum seekers? Secondly, what are the recent trends in Australian migration policy? Thirdly, how has the Australian government responded to the issues of asylum seekers over time? Fourthly, what are the examples of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regime on migration which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involved? The major argument of this study is that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emergence of bilateral or multilateral cooperation regime on migration at a global level, despite the rise in its significance in recent years. The case of Australia's asylum seeker policies in this study informs that individual countries have weak motivation to cooperate with other countries to solve migration problems. It is largely because there is a concern that putting migration governance within the exis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framework may be detrimental to state sovereignty. Moreover, what individual countries want to pursue by controlling their national borders (e.g. economic gains, national security, or human rights) differ in many cases. The aims of migration policies are often contradicting between the countries with different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and this is why they do not cooperate with one another in solving migration problems.

Key words: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migration, Australia's migration policies, refugees and asylum seekers, Bali Process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연결망과 구직경로가 임금수준에 미치는 효과

박형기*

본 논문은 외국인근로자의 이직이 그들의 임금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지, 그들의 사회연결망 구조와 이직 시 활용한 구직경로가 현재 임금수준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다루었다. 분석자료는 2010년 4월에 수집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고용실태 조사연구』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몽골 6개국 근로자 776명을 조사표본으로 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연결망은 자국인 친구수, 한국인 친구수, 자국인 단체 참여여부, 한국인 단체 참여여부, 자아중심적 연결망의 크기와 관계이질성으로 그 형태와 특징을 파악하였고 구직경로는 고용센터를 통한 경우를 공식경로로 친구 및 지인을 통한 경우를 비공식 경로로 구분하였다. 자발적 이직여부와 이직빈도를 함께 통제하여 이 변수들이 임금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자발적으로 이직을 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전혀 이직을 한 적이 없는 근로자보다 평균 임금 수준이 높았다. 하지만, 이직의 임금 상승에 대한 효과는 첫 번째 이직에만 한정되었고 이직의 빈도가 높아지면 임금 수준은 오히려 낮아졌다. 더욱이 이직에 따른 임금상승 효과는 공식경로를 통했을 경우에 임금이 상승되었고 비공식 경로를 통한 경우에는 임금상승 효과가 없었다.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연결망의 특성과 임금수준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수준은 고용허가제라는 제도적 환경 속에

* 한국산업인력공단 연구원, phg23@hrdkorea.or.kr

서 구조적으로 결정되며, 개인의 특성이나 사회연결망의 특성에 따른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제어: 외국인근로자, 사회연결망, 구직경로, 이직, 임금수준

I. 문제제기

외국인근로자¹⁾의 임금수준은 고용허가제라는 특수한 제도적 환경 속에서 결정된다.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차별 없이 국내 근로관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들은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이고 보다 낮은 인건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최저임금 이하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의 최초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로 취업하는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보다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것이다(이정환·김석호, 2010; 정기선·강동관·김석호·설동훈·이규용, 2010; 이규용·박성재, 2011). 그들은 국내에서 일하는 동안 최대한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 직장 내에서 잔업이나 연장근로를 하던지, 자신의 기술을 높이던지, 또는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을 한다. 이 중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전략은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는 사업장으로 이동 즉, 이직이라고 한다(설동훈, 1999; 유길상·이규용, 2001; 이해경, 2003; 이정환 외, 2010; 정기선 외 2010; 이규용·박성재, 2011).

이직이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직이 임금수준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Borjas, 1978; Keith and McWilliams, 1995; Light, 2005), 하지만 이직과 임금의 관계에는 이직의 원인과 목적, 이직과 관련된 거시경제 상황, 인적자본의 형성전략, 근무기간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직이 반드시 임금상승으로 이

1) 본 논문은 국내의 다양한 이주자 집단 중에서 고용허가제로 도입 관리되고 있는 단순기능인력(E-9) 그중에서 현재 합법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더 높은 임금, 인적자본의 축적, 직무적합도의 제고 등과 같이 도구적인 목적 하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을 때는 이직이 임금 수준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Keith and McWilliams, 1995; Mincer and Jovanovic, 1981; 금재호·조준모, 2002; 김혜원·최민식, 2008). 사회학에서는 이직의 임금효과에 대해 행위자의 사회 구조적 조건 및 속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근로자의 행위는 그가 속한 사회 구조적 조건 속에 배태(embedded)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개인의 사회적 관계는 구직활동의 양상에 영향을 미치며, 구직활동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다르며, 그 결과도 차이가 나타난다(Granovetter, 1973). 정보의 접근과 획득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구조의 사회 연결망을 보유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새로운 직업에 대한 기회와 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제안에 접근할 수 있는 개연성이 더 높은 것이다. 이들은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데 보다 더 유리하며, 구직 이후에도 더 높은 임금, 더 개선된 직무적합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래서 사회 연결망의 속성은 이직과 임금수준의 관계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게 된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외국인근로자의 이직이 임금수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업종, 근속기간, 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와 관련된 기본적인 외적요인과 함께 그들이 속한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 속성과 그 연결망에서 그들이 택한 행위 전략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외국인근로자의 이직이 그들의 임금수준을 높이는데 상관성이 있는지 특히 이 둘 간의 관계에 있어서 외국인근로자의 사회 연결망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지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많은 조사에서 국내 외국인근로자의 이직과 그 성과에 대해서 다루어 왔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들을 둘러싼 대인관계의 구조적 속성이 그들의 경제적 행위와 그 결과에 영향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직이 임금수준을 향상시키는지 또는 그 반대인지에 대해서 제한적으로만 분석하고 있을 뿐이다(설동훈, 1999; 유길상이규용, 2001; 석현호, 2003; 이정환 외, 2010; 정기선 외, 2010; 이규용 외, 2011).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에 오기 전부터 가족, 친척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한국 취업을 위한 유무형의 지원을 받는다(박경태·설동훈·이상철, 1999; 이정환 외, 2010; 정기선 외, 2010; 정기선·강동관·오정은·조영화·최서리·오인

규김혁래, 2012a). 한국에 도착한 이후에는 먼저 한국에 와 있는 가족, 친척, 친구 등으로부터 한국사회 적응에 도움을 받는다. 한국의 첫 직장에서 만난 한국인 고용주, 한국인 동료, 다른 외국인근로자 동료로부터도 도움을 받는다. 지역단위에서 형성된 자국인 근로자 모임, 공동체,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 등으로부터도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된다(정기선 외 2010, 2012a; 정기선·오정은·김환·학·최서라·신예진, 2012b). 요컨대, 국내 외국인근로자들은 구직활동 및 이직시 이러한 사회연결망을 어떠한 형태로든 활용할 것이며,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것이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그들의 사회연결망이 이직에 따른 경제적 성공에 어떠한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는지 규명하는 것은 외국인근로자와 한국사회의 상호작용 과정에 대해 보다 이해를 넓히는데 있어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그라노베터(Granovetter)는 인적 연결망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다른 수단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보다 일자리 획득 가능성 그리고 임금수준과 직무만족도 같은 일자리의 질 면에서 더 나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다(Granovetter, 1973, 1995). 하지만, 인적 연결망과 같은 비공식적 수단보다 광고, 중개기관 활용과 같은 공식적 수단이 임금상승과 상관이 있으며, 비공식적 수단의 경우에는 임금과 유의미성이 없거나 부의 관계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Huffman and Torres, 2001; Drentea, 1998). 그라노베터의 연구결과는 연구의 표본을 관리자, 전문직과 같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며,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표본에서는 그가 주장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 대상을 흑인, 이주자, 여성, 연소자, 저소득층 등 노동시장에서 약자들로 한정하더라도 전체적 수준에서는 인적연결망을 활용한 취업이 임금상승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단지 각 집단의 하위집단에서 부분적으로 임금 상승의 효과가 나타는 경우는 있었다고 한다(Aguilera 2003, 2005, 2008; Aguilera and Massey, 2003; Antoninis 2006; Huffman and Torres, 2001; Mouw, 2003b; Parks-Yancy 2006). 즉, 불법체류 외국인 이주자(Aguilera and

Massey, 2003) 및 여성 이주자(Portes and Jensen, 1989)와 같이 노동시장에서 가장 지위가 취약한 계층의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연결망을 통해 일자리 획득하는 것이 임금수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많은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는 이주 근로자나 2차 부문 취업자들에게 있어 인적 연결망을 통한 잦은 이직은 전반적인 임금수준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가족친척 및 친구와 같은 연결망을 통해 이직하는 것은 오히려 이들이 속한 저임금 노동시장에 사로잡히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Flores, 2006; Marsden and Gorman, 2001; Mouw, 2003a; Sander and Nee, 2002; Waldinger, 1994, 1997a; 강유진, 2007).

국내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취업시장의 구조상 공식 경로를 통해 취업하는 것이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취업하는 것보다 더 나은 근로조건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김성훈, 2003, 2005). 대기업, 고임금 등 취업시장의 상위부문에서는 인적접촉 등 비공식 경로보다는 공개채용, 입사시험 등 공식 경로를 통해 취업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비공식 경로를 통해 채용하는 일자리는 그보다 근로조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999년 서울지역 취업자 590명을 대상으로 한 이경상(2001)의 조사에서도 개인 연결망을 활용한 취업과 임금수준의 상승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지 않았다. 단지, 학교동창, 직장동료, 이웃사람 등 약한 연계를 활용한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가족친족과 같은 강한 연계를 통해 정보를 획득한 사람이 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 강정한·양유민(2013)은 2008년부터 2011년 4년간의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장애인의 경우는 가족, 친척, 선후배 등과 같은 강한 연계를 통해 취업한 경우 높은 임금을 받는데 효과적이지 못하였다고 한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학교의 추천이었으며, 업무상 알게 된 지인들 즉 약한 연계가 취업성공과 높은 임금을 받는데 효과적이었다고 한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취업기회가 매우 한정적이며, 장애인 학교의 중계가 주된 취업경로가 되는 국내 장애인 고용시장의 구조적 특성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시장에 대입해 볼 때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비공식 경로를 통할 때 공식 경로를 통하는 경우보다 임금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들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점하는 계층적 위치가 저임금의 단순기능 생산적이며 접근 가능한 취업기회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의 특성을 봐도 공식 경로를 통해서 외국

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더 좋은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 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금체불 등의 근로관계법 및 불법체류자 고용과 같은 출입국관리법 관련 위법사항이 없어야 하며 산재·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일정기간 내국인에 대한 고용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은 반드시 고용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이나, 친구의 소개와 같은 비공식 경로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센터를 통한 공식적인 절차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친구나 지인의 소개로 취업처를 먼저 정하고 난 뒤 필요한 행정적 절차 요건을 갖추는 방식을 활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월딩거(Waldinger, 1997b)는 국제이주자들에게 있어 비공식 경로를 통한 취업이 이입지 노동시장에서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 의미 있는 해석을 내놓았다. 국제 이주자의 노동시장에서 인적연결망을 통한 채용은 먼저, 풍부한 저임금 인력풀을 제공해 주며, 급할 때 사람을 바로 채용할 수 있도록 대체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리고 추천한 사람과 신규 채용자간의 가까운 관계를 활용하여 신규 채용자 관리를 보다 용이할 수 있다. 임금 협상에서도 신규 채용자가 낮은 수준에 만족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추천자가 신규 채용자에게 작업내용을 효과적으로 교육시켜 주어 빠른 시간 내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매력이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이 노동시장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인적접촉을 통한 취업이 임금 수준의 향상과 유의미한 관계를 못가지게 하거나 부의 관계를 가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 결국,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외국인근로자를 구하는 기업은 인력수요에 대한 장기적 계획이나 관리체계가 미흡하거나 공식적 채널에서는 경쟁력이 낮은 곳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공식 경로를 통하는 경우가 공식 경로를 통하는 경우보다 낮은 임금, 낮은 안정성 등과 같은 불리한 조건의 일자리일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는 것이다.

가설 1.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이직한 외국인근로자는 공식 경로를 통해 이직한 외국인근로자 보다 임금수준이 더 낮을 것이다.

구직경로와는 별도로 자신들이 보유한 연결망 형태와 구조가 이직의 임금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몽고메리(Montgomery, 1992)는 이직의 임금효과는 이직시 활용한 수단 보다 개인이 보유한 연결망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연결망이 정보의 전달과 영향력 면에서 우수한 형태라면 보다 많은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고 그래서 보다 적합성이 높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직이 임금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Aguilera and Massey, 2003; Montgomery, 1992; Marsden and Gorman, 2001). 모우(Mouw, 2003a)는 이러한 몽고메리(Montgomery)의 논리를 대단위 표본조사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확인했다. 그는 미국의 국가청년패널(NLSY: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Youth) 등 4개의 대단위 표본조사를 분석하면서 몽고메리(Montgomery)가 지적했듯이 사회자본 변수로서 같은 직업에 있는 친구의 비율, 친구들의 평균교육 수준이 임금수준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인적연계를 활용한 취직은 임금수준과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사회자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73)가 보여주었던 구직수단에 따른 임금효과는 선택적인 표본에 의해서 나타난 동질성(homophily) 효과(Mcpherson, Lynn Smith-Lovin and James M. Cook, 2001)로 보인다고 한다.

국내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정보의 습득과 활용에 보다 우세한 연결망을 가진 경우 이직을 통해서 임금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자국인 연결망의 크기가 크면 보다 많은 정보에 접근이 가능할 것이고 그 연결망의 강도가 강하면 새로운 취업기회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영향력은 더 클 것이다. 그리고 연결망의 이질성이 높으면 자신을 둘러싼 일상을 벗어난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 정보의 양 많거나 접근력이 더 좋을수록 유보임금(reservation wage) 수준을 높게 가져갈 수 있고(Montgomery, 1992), 정보를 통해서 자신에게 보다 적합하고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Granovetter, 1995). 결국 연결망의 크기가 크고 강도가 강하고 연결망의 이질성이 높을수록 이직을 통해서 임금수준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설 2. 자국인 연결망의 크기가 큰 외국인근로자일수록 이직을 하게 되면 임금이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가설 3. 자국인 연결망 중 약한 연계보다 강한 연계가 발달한 외국인근로자일수록 이직을 하게 되면 임금이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가설 4. 이질성이 높은 연결망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일수록 이직을 하게 되면 임금이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연결망이 한국인들과 연계된 경우인가 아니면 자국인들과 연계된 경우인가에 따라서 이 효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인 연결망은 이직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전달력 면에서 자국인 연결망보다 효능이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이주자가 주류사회 구성원과 연결망이 발달되어 있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Light, 2005; Portes and Bach, 1985). 주류 노동시장과 민족집단 공동체 노동시장의 서로 분리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주류사회 노동시장의 임금이 보다 높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주류 노동시장에서 일 자리를 얻게 되면 소득수준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국내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그래서 위와 같은 효과는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두 집단 간의 노동시장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인과 관계를 맺는 시간이 많을수록 자신들이 속한 노동시장에서의 정보획득에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회 연결망과 임금수준의 관계는 정보의 양 및 접근성과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국인 연결망이 상대적으로 클수록 자신들이 진입 가능한 노동시장에서의 정보 접근에 더 유리할 것이다.

가설 5. 한국인 연결망이 발달된 큰 외국인근로자 일수록 이직을 하게 되면 임금이 더 낮아지게 될 것이다.

III.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고용실태 조사연구』(2010) 자료이다. 이 자료는 2009년 11월 30일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70%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경인지역 업체에 근무하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몽골 6개국 출신의 외국인근로자들을 자기기업식 조사를 통해서 수집한 자료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근로자 명단을 모집단으로 하여 크기비례확률(probability proportionate to size)에 따른 다단계집락표집법(multistage cluster sampling)으로 사업장을 추출한 뒤 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로 표본리스트를 작성한 뒤 조사하였다. 최종표본은 총 1,167명이며, 이 중 776명(응답률 76.2%)을 응답하였다. 모집단의 분포와 추출된 표본의 분포는 다음 <표-1>과 같다.

<표 1> 경인지역 6개국 외국인근로자와 조사표본 외국인근로자의 국적

국 적	모집단수 (모집단 외국인수)		표본수 (표본 외국인근로자수)	
전체	60,783명	100%	1,167명	100%
베트남	18,156명	29.9%	250명	21.4%
필리핀	11,446명	18.8%	226명	19.4%
태국	13,015명	21.4%	182명	15.6%
인도네시아	7,623명	12.5%	211명	18.1%
스리랑카	5,809명	9.9%	157명	13.5%
몽골	4,734명	7.8%	141명	12.1%

자료: 이정환·김석호, 2010.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고용 실태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가. 종속변수

본 논문의 주된 분석대상인 종속변수는 ‘평균임금’으로 하였다. 본봉을 비롯하여 시간외 수당, 부수입, 보너스 등 임금 성격의 모든 금품을 포함하였다. “평균적으로 귀하의 월급은 한국 돈으로 얼마입니까? 본봉, 시간외 수당, 부수입, 보너스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적어주십시오”라는 설문으로 측정되었으며, 외국인근로자가 직접 평균금액을 쓰도록 하였다. 분석시에는 평균임금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조사결과 전체 외국인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34.25만원(표준편차 22.24)이었다.

나. 독립변수

1) 자발적 이직 여부

이직에 따른 임금변화를 고려하는데 있어 이직의 유형을 구분하여 통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발적으로 이직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연구결과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이직을 자발적으로 선택했을 경우 임금 상승의 효과가 나타나지만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임금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한다(Keith and McWilliams, 1995; Mincer, 1981; 금재호·조준모, 2002; 김혜원·최민식, 2008). ‘자발적 이직여부’는 직전 직장에서의 이직사유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특히 이직사유가 현 직장의 근로조건, 사회적 관계, 인사관리방식, 노동강도 등에 대한 불만족 그리고 보다 나은 근로여건과 환경을 얻기 위해 이루어진 경우는 ‘자발적’ 이직으로, 휴·폐업 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정리해고 등으로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776명 중 419명이 54.6%가 회사를 옮긴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이 중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례는 259명(61.8%)이고 비자발적 이직자는 160명(38.2%)이었다.

2) 이직빈도

이직빈도는 “지금의 회사는 몇 번째 회사입니까”라는 질문으로 측정되었다. 조사대상 외국인근로자 776명 중 422명(54.8%, 무응답 6명)이 이직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 1회 이직한 사람이 294명(38.2%), 2회 95명(12.3%), 3회 25명(3.2%), 4회 5명(0.6%), 5회 3명(0.4%)이었으며, 이직 빈도가 높아질수록 구성비는 급격하게 낮아졌다. 전체 이직자 중 69.7%는 1회 이직에 그치며, 2회는 22.5%, 3회 이상은 7.8%이었다.

3) 구직경로

구직경로는 가장 최근 이직시 활용한 구직경로로 측정되었다. 여기서 구직경로를 정의하고 구분하는데 있어서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73)의 기준을 참고하였다. 새로운 직장을 얻는데 있어 활용한 구직수단으로서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인적접촉을 이용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공식 경로’와 ‘비공식 경로’로 조직적으로 구분하였다. ‘공식 경로’를 통하는 경우 고용센터의 공무원이 사업주의 연락처를 주거나 소개하거나 또는 공개 채용행사에서 사업주를 만나 근로조건을 협상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공식 경로’는 공식 경로와는 구분되게 현재의 직장 구인정보를 인적접촉을 통해서 얻은 경우를 의미한다. 본 분석에서는 ‘노동부/고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회사 명단’ 만을 통해 취업한 경우를 ‘공식 경로’로 그 외 ‘자국인 친구 또는 친척’, ‘자국인 사회/종교단체’, ‘자국인 직업소개업자/광고 사이트’, ‘한국인 친구 또는 친지’, ‘한국인 사회/종교단체’, ‘한국인 직업소개업자/광고 사이트’, ‘현재 회사의 사장님’, ‘기타’를 통해 취업한 경우를 ‘비공식 경로’로 구분하였다.

4) 사회 연결망 변수

외국인근로자의 사회 연결망은 이름생성기(NGQ: name generator question) 및 이름해석기(NIQ: name interpreter question)를 활용하여 자아중심적 연결망(ego-centric network)을 측정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자아중심적 연결망의 수를 4명으로 제한하였고, ‘지난 6개월 동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의논’ 한 사람으로, 의논 시점에서 한국에 거주했거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만 제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자아중심적 연결망을 활용해서 측정된 다양한 변수 중 연결망의 크기(size), 관계이질성(heterogeneity)을 설명변수로 채택하였다. 자아중심적 연결망에서 크기(size)는 얼마나 많은 타자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로 연결망에서 응답

된 타자의 수를 셈하였다. 연결망의 크기가 클수록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연결점과 범위가 넓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자아중심적 연결망에서 평균 연결망의 크기는 2.69명(표준편차 1.66)이었다. 크기 1명은 88명(11.3%), 2명은 53명(6.8%), 3명은 37명(4.8%) 마지막으로 4명은 446명(57.5%)이었다. 관계이질성(heterogeneity)은 자아중심적 연결망 내에서 각 타자와 응답자간의 관계가 얼마나 이질적인지 측정하였다. 여기서 응답범주는 ‘가족, 친척’, ‘자국인 직장동료/상사’, ‘한국인 직장동료/상사’, ‘자국인 친구’, ‘한국인 친구’, ‘기타’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응답자가 관계하고 있는 타자들이 서로 상이한 집단 정체성으로 구성되어 있을수록 이 연결망의 구조적 공백이 많다고 할 수 있다(Burt, 1997). 본 연구에서는 이 연결망의 이질성을 질적 변이 지표(Index of Qualitative Variation: IQV²⁾)로 계산하였다(Agresti, 2002). 본 조사에서는 전체 776명의 표본 중 자아중심적 연결망의 타자가 1명 이하인 경우와 타자와 문항 무응답인 244개 사례를 제외하고 계산³⁾하였다. 표본의 관계이질성 평균은 .26(표준편차 .28)로 비교적 관계이질성이 낮았다.

이름생성기 방법에는 연결망 내에서 최대인원의 수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본 조사에서는 보다 개인의 연결망에 대하여 보다 풍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별도의 문항을 함께 활용하였다. ‘자국인 친구수’와 ‘한국인 친구수’, ‘자국인 단체참여’와 ‘한국인 단체참여’가 그것이다. 자국인 또는 한국인 친구수는 각 개인이 보유한 친구들의 수를 질문하였다. 자국인 친구수와 한국인 친구수를 따로 측정한 것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주류사회 즉 한국인들과 얼마나 연결망이

2) IQV는 IQV는 0부터 1까지의 분포를 값을 가지며,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과 많이 어울릴수록 그 수치가 1에 가깝다. 일반적으로 IQV가 높으면 다양한 정보 또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Burt, 1997).

3) 관계이질성(IQV) 변수는 자아중심적 연결망에서 타자가 최소 2명 이상인 경우에만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변수를 단일 연속형 변수로 활용하게 되면 244개 사례(전체 31.4%)가 결측치로 제외된다. 이 경우 분석결과에서 선택편의(selection bias)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관계이질성(IQV)이 계산되지 않는 사례만으로 별도의 변수로 구성하여 분석모형에 통제하였다. 자아중심적 연결망에서 유의미한 타자가 1명도 없는 경우는 사회적 고립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 무응답의 사례일 가능성도 높다. 이 때문에 별도의 이론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형성되어 있는지 고려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외국인근로자들의 평균 자국인 친구수는 4.35명이었으며, 한국인 친구수는 1.39명이었다. 상대적으로 한국인 친구수가 자국인 친구수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모임’도 연결망 변수로 고려하였다. ‘자국인 친구/친인척 모임’과 ‘자국인 사회/종교 단체’를 ‘자국인 모임참여’로 ‘한국인 친구/직장동료 모임’과 ‘한국인 사회/종교 단체’를 ‘한국인 모임참여’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아무 단체도 없음’과 ‘기타’를 ‘아무 단체도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변수는 ‘아무단체도 없음’을 기준으로 더미화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국내 외국인근로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모임을 조직하고 있다. 이 모임들은 자국민들끼리의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한국인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자국민 공동체에서는 활발하게 정보가 유통되고 있으며, 여기서 심리적 물질적 지원을 받기도 한다(박경태 외, 1999; 이정환 외, 2011). 일반적으로 자발적 결사체는 개인의 연결망의 범위, 특히 약한 연계의 범위의 확장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McPherson and Smith-Lovin, 1982, 1986). 자발적 결사체에 대한 참여율이 높은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연결망이 더 크며, 그것의 확장하는데 대한 기회도 더 많다고 한다. 본 조사 자료에서 활용한 자아중심적 연결망(ego-centric network)은 ‘지난 6개월간 중요한 일을 의논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의미상 강한 연계의 연결망이다. 그리고 자국인/한국인 친구수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가까운’ 친구의 수로 파악되어 의미적으로 친밀감이 높은 강한 연계를 측정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약한 연계를 간접적으로 정의할 수밖에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자국인 및 한국인 단체 참여가 많은 근로자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약한 연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사회 연결망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2> 사회연결망 변수 기술통계

변수	변수측정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연결망 크기 (연속형)	귀하는 지난 6개월 동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떤 분들과 의논하셨습니까?	-	-	2.69	1.66
관계 이질성 (더미화)	이 분과 귀하는 어떤 관계입니까? (복수응답) ① 가족, 친척, ② 자국인 직장동료/상사, ③ 한국인 직장동료/상사, ④ 자국인 친구, ⑤ 한국인 친구, ⑥ 기타 0 (준거집단) 0 ~ 0.49 0.5 ~ 1 계산안됨(크기(size) 1 이하 및 무응답)	$IQV = \frac{k(1 - \sum_{i=1}^k p_i^2)}{k-1}$ k : 범주수, p : 각 범주 비율			
		280 135 117 244	36.1 17.4 15.1 31.4	0.26	0.28
자국인 친구수 (연속형)	귀하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까운 자국인 친구는 한국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	-	4.35	3.11
한국인 친구수 (연속형)	귀하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까운 한국인 친구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	-	1.39	2.27
자국인 모임참여 (더미화)	귀하는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나 모임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참여하는 단체나 모임 1개만 체크 표시하여 주십시오 0= ⑤ 아무 단체도 없음 + ⑥ 기타 1= ① 자국인 친구/친인척 모임 + ② 자국인 사회/종교 단체	463	61.2	-	-
한국인 모임참여 (더미화)	0= ⑤ 아무 단체도 없음 + ⑥ 기타 1= ③ 한국인 친구/직장동료 모임 ④ 한국인 사회/종교 단체	72	9.5	-	-

3)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인적자본 변수 및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을 분석에 포함했다. 우선, 인적자본 변수로는 외국인근로자의 교육수준, 한국어 능력, 체류기간, 한국 입국 전 취업상태를 채택하였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어, 한국문화 그리고 한국제도에 대한 이해력과 수용력이 더 높을 것이며, 이에 따라 보다 전략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어 능력은 이입지 적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적자본이다. 한국말이 능숙할수록 한국에 대한 문화적 적응력이 좋고 한국 미디어 활용, 한국 공식기관 활용도 등이 늘어날 수 있다. 무엇보다 한국인과의 연결망 형성이 가능해진다. 셋째, 체류기간은 이주 이후의 경제적 성공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변수이다. 체류기간이 길수록 이입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문화적 이해도가 늘어나며, 사업장에서의 숙련도가 늘어나서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조건이 된다(Bailey and Waldinger, 1991). 체류기간은 입국한 날짜(년월)를 기입하게 하여 조사시점인 2010년 4월을 기준으로 역산하였다. 마지막으로 입국전 취업상태도 분석에 고려하였다. 입국전 취업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취업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력 및 적응력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로조건과 관련된 변수로는 주당 평균근무시간, 현 회사 근속기간을 포함하였다. 본 조사 결과 외국인근로자의 평균 근무시간은 62시간(표준편차 15.4)이었다. 주당 규정 근무시간을 44시간이라고 할 때 평균 18시간 정도 연장, 야간 혹은 휴일근무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근속기간이 높아질수록 임금수준은 높아질 수 있다. 근로계약이 1년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면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 그들은 보다 높은 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근속기간이 많아지면 사업장 특수적 숙련도가 쌓이게 되어 자연히 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로서는 국적, 성별, 혼인상태, 연령을 분석모형에 통제하였다. 국적은 가장 이직률이 낮은 태국 근로자를 기준으로 더미화하였고, 성별은 여성을 기준으로 더미화하였다. 혼인상태는 ‘미혼’을 기준으로 기혼, 동거, 사별, 이혼, 별거를 모두 ‘기혼’으로 포함하였다. 연령은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측정되었으며, 2010년을 기준으로 출생년도를 뺀 값을 연령으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용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을 통제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회사의 업종과 규모를 각 사업장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로 조사했고, 이 결과는 해당 회사에 소속된 외국인근로자 표본에 일괄 대입하였다. 사업자의 업종은 ‘섬유봉제’, ‘목재가구’, ‘석유화학’, ‘금속기계’, ‘전기전자’, 그리고 ‘기타’ 6종으로 크게 분류했으며, ‘기타’를 기준으로 더미화하였다. 통제변수를 종합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통제변수의 정의 및 기술통계

변수		변수측정	빈도	비율	평균	표준 편차
국적(더미화)		0 = 태국 기준더미	-	-	-	-
성별(더미화)		0 = 여자, 1 = 남자	712	91.9	-	-
혼인상태 (더미화)		0 = ① 미혼 1 = ② 기혼, ③ 동거 ④ 사별, ⑤ 이혼, ⑥ 별거	416	53.6	-	-
연령		2010년 - 출생년도	-	-	31.9	5.60
학력 (교육수준 범주)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2 년제 대학 ⑥ 4년제 대학 ⑦ 대학원이상	-	-	4.22	0.99
한국말실력 (5점 리커트)		① 매우 잘한다 ② 약간 잘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잘 못한다 ⑤ 거의 못한다(변수값 역치)	-	-	2.77	0.79
체류기간(개월)		2010.4월 - 입국년월	-	-	45.1	23.4
입국전 취업상 태(더미화)		0 = 무직, 실직 1 = 미숙련노동자, 숙련노동자 등	659	85.8	-	-
일주일 평균 근 무시간(시간)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잔업, 휴일근무 포함)	-	-	62.0	15.4
현 직장 근속기간(개월)		현 회사에서 일한 기간(개월수)	-	-	30.1	19.5
업종	기타	0= ⑮기타산업	122	17.5	-	-
	섬유봉제	1= ①섬유제품, ②의복/모피, ③가죽/가방/신발	53	7.6	-	-
	목재가구	④목재/나무, ⑤가구	73	10.5	-	-
	석유화학	⑥석유정제, ⑦화학물/화학제품, ⑧고무/플라스틱	144	20.7	-	-
	금속기계	⑨조립금속, ⑩기타 기계장비, ⑪사무기계	247	35.5	-	-
	전기전자	⑫전기기계/전기변환장치, ⑬영상/음향/통신장비, ⑭ 의료/정밀/ 광학기기/시계	57	8.2	-	-
회사규모		0= 4인 이하	67	9.5	-	-
		1= 5인~9인이하	129	18.3	-	-
		10인~29인이하	284	40.2	-	-
		30인~99인이하	137	19.4	-	-
		100인~300인	89	12.6	-	-

3. 분석모형

첫째, 인적연결망을 활용한 이직에 따라 임금의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 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둘째, 가설 1~5에서 제기한 임금수준에 대한 구직경로 및 사회연결망의 효과는 중다회귀모형(multiple regression model)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최근 이직의 자발성 여부를 통제하고, 이직회수가 누적될수록 각 독립변수의 효

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발적 이직경험’을 독립변수로 하는 모형(모형 1 ~ 모형 3, 모형 7 ~ 모형 9)과 ‘이직빈도’를 독립변수로 하는 모형(모형 4 ~ 모형 6, 모형 10 ~ 모형 12)을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이직빈도’에 대한 모형에서는 이직빈도에 따른 임금수준의 변화가 직선형이 아니라 곡선형이었음을 감안하여 이차방정식 회귀모형(quadratic regression model)을 구성하였다. ‘자발적 이직경험’ 관련 모형에서는 이직시 현 직장에 대한 구직 경로가 공식 경로인지 비공식 경로인지 구분하여 별도의 모형을 구축(모형 2, 모형 3)하였다. ‘이직빈도’에 대한 모형에서는 이직횟수가 누적됨에 따라 각 구직수단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판별하고자 하였다. 이직빈도가 늘어날수록 사회 연결망이 확대 발전될 것이며 이전의 이직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학습된 사항이 그 다음의 이직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1번째+공식경로’, ‘1번째+비공식경로’, ‘2번째 이후+공식경로’ 그리고 ‘2번째 이후+비공식경로’로 변수를 생성하였다. 표본에서 이직빈도가 3회 이상인 경우가 총 33명에 불과하여 이들을 별도로 구분하여 분석에서 감안하지 못하였다. 이들은 ‘2번째 이후’ 범주에 포함되었다.

모든 분석은 <표 1>에서 나타난 국적별 모집단의 비율의 따라서 가중치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나타나는지 점검하기 위해 독립변수간의 상관계수와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을 통해 점검한 결과, 문제가 있는 변수는 없었다.

IV. 분석결과

1. 외국인근로자의 이직 및 구직경로

<표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외국인근로자 776명 중 422명(54.8%, 무응답 6명)이 자의든 타의든 한국에서의 취업생활 중에 한 번 이상 이직을 선택하였다고 한다. 1회 이직한 사람이 294명(38.2%), 2회 95명(12.3%), 3회 25명(3.2%), 4회 5명(0.6%), 5회 3명(0.4%)이었다. 전체 이직자 중 69.7%는 1회 이직에 그치며, 2회 22.5%, 3회 이상 7.8%로 이직 빈도가 높아질수록 그 구성비는 급격하게 낮아졌다.

평균적으로 .77회(표준편차 .88) 이직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이직빈도는 높지 않았다.

<표 4> 외국인근로자의 이직빈도

(단위 : 명, %)

계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무응답
776	348	294	95	25	5	3	6
100	45.2	38.2	12.3	3.2	0.6	0.4	-

다음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이직시 활용한 구직경로를 보면 <표 5>와 같다. 고용허가제라는 제도적인 환경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비공식 경로(31.0%)보다는 공식 경로(69.0%)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 경로로서는 ‘자국민 친구 또는 친척’이 62명(14.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한국인 친구 또는 친지’가 24명(5.7%), ‘한국인 직업소개업자/광고사이트’ 20명(4.7%) 순이었다. 고용허가제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용센터 외 누구도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에 채용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하지만, 이 조사결과는 외국인근로자 채용시장에도 암암리에 비공식적 절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친구 친지 등과 같은 개인적인 인적 연결망이 활용되거나 직업소개업자와 같은 비공식적인 직업알선 브로커가 활동한다는 것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표 5> 외국인근로자 이직시 활용한 구직경로

구분	현재의 회사 소개자	사례수(명)	비율(%)
전체		428	100
공식경로	노동부/고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회사 명단	292	69.0
비공식 경로	소개	131	31.0
	자국인 친구 또는 친척	62	14.7
	자국인 사회/종교단체	3	0.7
	자국인 직업소개업자/광고사이트	3	0.7
	한국인 친구 또는 친지	24	5.7
	한국인 사회/종교단체	3	0.7
	한국인 직업소개업자/광고사이트	20	4.7
	현재 회사의 사장님	13	3.1
	기타	3	0.7
무응답		5	-

<표 6>은 이직빈도에 따른 구직경로를 보여준다. 첫 번째 이직을 한 사람은 전체 32.9%가 비공식 경로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직한 사람의 비공식 경로를 활용하는 비중은 각각 25.3%, 28%로 낮았다. 첫 번째에 비해 두 번째 이직자의 비공식 경로 활용도가 어느 정도 낮아졌지만 그 이후부터는 다시 비공식 경로를 활용하는 비중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직장생활 경험이 쌓이고 행정적 절차에 익숙해짐에 따라 두 번째 이직에서는 공식 경로를 활용하는 비중이 더 커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세 번째 이직에서부터는 비공식 경로를 활용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직에 대한 고용주의 반발과 이직 과정에서의 비용이 커지고 인적 연결망이 더 발달하게 됨에 따라 인적연결망을 활용하는 비중이 더 높아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6> 외국인근로자 이직빈도에 따른 구직경로

구 분		전체	이직빈도				
			1회	2회	3회	4회	5회
전체	사례수	420	292	95	25	5	3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공식경로	사례수	289	196	71	18	2	2
	비율(%)	68.8	67.1	74.7	72.0	40.0	66.7
비공식 경로	사례수	131	96	24	7	3	1
	비율(%)	31.2	32.9	25.3	28.0	60.0	33.3

주 1) 차이검증 n.s. ($p < .01$), n.s.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함.

2) 무응답 사례 8명 제외

2. 외국인근로자의 이직과 임금수준의 관계

<그림 1>은 이직빈도에 따른 임금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직빈도와 평균 임금 수준은 역 U자 형태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회 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은 135.65만원으로 이직경험이 없는 근로자들보다 임금수준 133.04만원보다 2.61만원 더 높았다. 그런데, 이직빈도가 2회차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회 이직한 근로자보다 임금수준이 낮았다. 2회 이상부터는 이직빈도가 높아질수록 임금수준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 임금차이는 통계적 유의성(χ^2)이 낮아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이직횟수가 누적됨에 따라 임금 수준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시사점은 얻을 수 있다.

<그림 1> 이직빈도별 평균 임금수준의 변화



주 : 차이검증 n.s. ($p < .01$), n.s.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함.

<표 7>은 구직경로와 임금수준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공식 경로를 통해서 이직하는 것이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이직하는 것보다 임금수준이 평균 1.67만원 높았다. 이 차이는 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2.28만원으로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 0.67만원 보다 높았다. 이 결과를 볼 때 인적 연계를 통해 이직한 것이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한 것보다 임금수준이 높아지는데 유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구직경로와 임금수준 간의 관계

(단위 : 명, %, 만원)

		계		자발적 이직		비자발적 이직	
		인원	평균임금	인원	평균임금	인원	평균임금
계		409	135.19	252	136.38	157	133.28
공식경로	인원(명)	285	135.70	176	137.07	109	133.49
	비율(%)	(69.7)		(69.8)		(69.4)	
비공식 경로	인원(명)	124	134.02	76	134.79	48	132.81
	비율(%)	(30.3)		(30.2)		(30.6)	
임금차		-	1.67	-	2.28	-	0.67
차이검증		n.s.					

주 : n.s.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함.

3. 임금수준에 대한 구직경로 및 사회연결망의 효과 분석

<표 8>은 임금수준에 대한 구직경로의 효과를 중다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모형 1을 분석한 결과 자발적 이직은 유의미하게 임금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형 4를 보면 이직빈도가 낮을 때는 이직에 따라 임금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나 이직빈도가 더해질수록 임금수준은 오히려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의 이직에 따른 임금수준의 변화 그래프에 모집단의 비중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난 것이다. 정기선 외(2010)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6%가 사업장 변경 후 임금수준이 늘었다고 응답했고 임금수준도 이전에 월평균 128만원이었으나 이직 후 137만원으로 올랐다고 응답했다. 이규용·박성재(2011) 역시 비슷한 조사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렇지만 이직빈도를 통제하면 이직빈도가 높아질 경우 이직에 따른 임금효과는 사라지고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구직경로가 임금수준의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한 가설 1을 검증해 보았다. 모형 2, 모형 3, 모형 5, 그리고 모형 6에서는 각각 공식 경로와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이직한 경우를 구분해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이직의 임금상승 효과는 공식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에서만 유의미하며 비공식 경로를 통한 경우에는 그 유의미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 경로를 통한 이직이 임금상승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이직한 경우는 공식 경로를 통해 이직한 경우와 달리 임금상승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이 결과는 가설 1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직빈도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 5와 모형 6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 첫 번째 이직까지는 공식 경로와 비공식 경로 모두 임금상승에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두 번째 이직 이후로 부터는 이직의 임금상승 효과는 공식 경로를 통했을 때에만 나타났다. 비공식 경로를 통했을 때는 그 효과가 사라졌다. 비록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없었지만 취업사업장 특성변수를 고려한 모형 6에서는 관계의 방향이 오히려 부의 방향으로 돌아섰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이주자들은 비공식 경로를 통한 취업이 이입지 노동시장에서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 왈딩거

(Waldinger, 1997b)의 설명에 설득력을 부여한다. 요컨대 이직빈도와 구직경로 그리고 임금수준간의 관계를 보면 이직에 따라 임금상승 효과가 부분적으로 확인되지만, 이 효과는 첫 번째 이직에서만 그리고 공식 경로를 통한 이직에서만 나타났다. 이직빈도가 늘어나고 비공식 경로를 활용하게 될 경우 임금상승 효과는 없어졌다.

분석모형에 포함된 인적자본 변수들은 모두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연구에서 지적했듯이 외국인근로자가 속한 단순기능직 노동시장에서 기존 본국에서 획득한 그들의 인적자본은 활용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Portes and Sensenbrenner, 1993; 설동훈, 1996). 더욱이 한국어와 같이 국내 취업이후 획득한 인적자본도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 근무시간과 현 회사의 근속기간은 임금수준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쳤다. 모형 3과 및 모형 6과 같이 회사의 규모와 업종을 통제하여도 이 두 변수의 설명력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외국인근로자 노동시장의 임금결정 구조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근무시간이 길다는 것은 정규 근무시간 외 연장근무가 많다는 의미이다. 연장근무에 따른 가산임금은 전체 임금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근속기간 역시 임금의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다. 첫 번째 근로계약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 임금수준이 더 높일 수 있다. 모형 3과 모형 6에서는 업종별 임금수준 차이를 보았는데, 업종별로 섬유봉제, 금속기계, 석유화학 업종이 기타 업종보다 임금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업종별 평균 근무시간에서 차이와 업종 고유의 차이가 임금수준에 반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평균 근무시간은 섬유봉제(67.4시간) 목재가구(63.9시간) 기타(62.5시간), 금속기계(62.2시간), 석유화학(59.8시간), 전기전자(57.5시간)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⁴⁾. 앞서 설동훈(1999)은 국내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수준은 개인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본 분석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다시 확인된다.

<표 8> 임금수준에 대한 구직경로의 효과 중다회귀분석 결과

4) 근무시간의 순과 임금수준 순의 차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관찰되지 않은 업종별 임금 차이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B	s.e.	B	s.e.	B	s.e.	B	s.e.	B	s.e.	B	s.e.
자발적 이직+구직경로												
자발적이직	.031*	(.01)	-		-		-		-		-	
자발적이직+공식경로	-		.032*	(.02)	.030†	(.02)	-		-		-	
자발적이직+비공식경로	-		.028	(.02)	.018	(.03)	-		-		-	
이직빈도+구직경로												
이직빈도	-		-		-		.055**	(.02)	-		-	
이직빈도제곱	-		-		-		-.013**	(.00)	-		-	
1번째+공식경로	-		-		-		-		.055**	(.02)	.041*	(.02)
1번째+비공식경로	-		-		-		-		.048*	(.02)	.043†	(.02)
2번째 이후+공식경로	-		-		-		-		.051*	(.02)	.059*	(.02)
2번째 이후+비공식경로	-		-		-		-		.019	(.04)	-.008	(.04)
인적자본 변수												
교육수준	.005	(.01)	.005	(.01)	.004	(.01)	.003	(.01)	.003	(.01)	.003	(.01)
한국어능력	.003	(.01)	.003	(.01)	.006	(.01)	.002	(.01)	.001	(.01)	.004	(.01)
체류기간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입국전취업상태	.021	(.02)	.021	(.02)	.032	(.02)	.019	(.02)	.019	(.02)	.031	(.02)
근로관련 변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002**	(.00)	.002***	(.00)	.002***	(.00)	.002***	(.00)	.002***	(.00)	.002***	(.00)
현 회사 근무기간	.001**	(.00)	.001**	(.00)	.001**	(.00)	.002***	(.00)	.002***	(.00)	.001**	(.00)
사회인구학적 변수												
베트남	-.003	(.02)	.003	(.02)	.006	(.02)	-.002	(.02)	-.006	(.02)	-.001	(.02)
필리핀	.032†	(.02)	.032	(.02)	.026	(.02)	.031	(.02)	.028	(.02)	.025	(.02)
인도네시아	.044†	(.02)	.044†	(.02)	.021	(.03)	.039†	(.02)	.039†	(.02)	.017	(.03)
스리랑카	.049*	(.02)	.049*	(.02)	.041	(.03)	.045†	(.02)	.043†	(.02)	.039	(.03)
몽골	-.006	(.03)	-.006	(.03)	-.010	(.03)	-.007	(.03)	-.004	(.03)	-.005	(.03)
성별	.001	(.02)	.001	(.02)	.011	(.02)	.006	(.02)	.008	(.02)	.014	(.02)
혼인상태	.003	(.01)	.003	(.01)	.007	(.02)	.004	(.01)	.002	(.01)	.005	(.02)
연령	-.001	(.00)	-.001	(.00)	.000	(.00)	-.001	(.00)	-.001	(.00)	-.001	(.00)
취업사양장 특성 변수												
회사규모(5인~9인이하)	-		-		-.032	(.03)	-		-		-.034	(.03)
회사규모(10인~29인이하)	-		-		-.008	(.02)	-		-		-.013	(.02)
회사규모(30인~99인이하)	-		-		-.003	(.03)	-		-		-.004	(.03)
회사규모(100인~300인)	-		-		-.021	(.03)	-		-		-.018	(.03)
업종대분류(섬유봉제)	-		-		.118***	(.03)	-		-		.114***	(.03)
업종대분류(목재가구)	-		-		.007	(.03)	-		-		.010	(.03)
업종대분류(석유화학)	-		-		.039†	(.02)	-		-		.037†	(.02)
업종대분류(금속기계)	-		-		.054**	(.02)	-		-		.053**	(.02)
업종대분류(전기전자)	-		-		.041	(.03)	-		-		.039	(.03)
상수	4.641*	(.07)	4.641***	(.06)	4.600***	(.07)	4.637***	(.07)	4.634**	(.07)	4.598**	(.07)
N	684		684		613		690		687		615	
F	4.613		4.321		3.487		4.749		4.316		3.477	
R ²	.094		.094		.129		.101		.104		.138	

주: 1) † $p < .1$, * $p < .05$, ** $p < .01$, *** $p < .001$ 양측검증

2) 자발적 이직(자발적 이직=1, 이직경험 없음=0); 자발적 이직+공식경로(자발적 이직+공식경로=1, 이직경험 없음=0); 자발적 이직+비공식경로(자발적 이직+비공식경로=1, 이직경험 없음=0); 1번째+공식경로(1번째+공식경로=1, 이직경험 없음=0); 1번째+비공식경로(1번째+비공식경로=1, 이직경험 없음=0); 2번째 이후+공식경로(2번째 이후+공식경로=1, 이직경험 없음=0); 2번째 이후+비공식경로(2번째 이후+비공식경로=1, 이직경험 없음=0); 교육수준(무학 1 ~ 대학원이상 7); 입국전 취업상태(입국전 취업상태=1, 무작실직=0); 국적(베트남=1, 필리핀=1, 인도네시아=1, 스리랑카=1, 몽골=1, 태국=0); 성별(남자=1, 여자=0); 혼인상태(기혼동거·사별·이혼·별거=1, 미혼=0); 회사규모(5인~9인이하, 10인~29인이하, 30인~99인이하, 100인~300인이하=1, 4인이하=0); 업종대분류(섬유봉제, 목재가구, 석유화학, 금속기계, 전기전자=1, 기타산업=0)

<표 9>는 이직의 임금효과에 대하여 사회연결망의 특성을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표 8>의 모형을 바탕으로 자국민/한국인 친구수, 자국민/한국인 모임 참여여부, 연결망 크기, 관계이질성과 같은 사회연결망 변수를 순차적으로 추가하여 분석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런데 이 모형을 분석한 결과 사회연결망과 관련된 변수들 중 임금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하나도 없었다. 사회연결망이 이직에 따른 임금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한 가설 2~가설 5를 모두 기각할 수밖에 없는 결과였다⁵⁾.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73), 버트(Burt, 1992)는 특정한 형태의 연결망은 상대적으로 정보의 전달과 획득에 유리하며 이것을 통해서 더 나은 임금, 직무만족도, 직무적합도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고 몽고메리(Montgomery, 1992) 및 모우(Mouw, 2003a) 등은 구직경로가 높은 소득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망의 성격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국내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사회연결망의 특성이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내 외국인근로자 노동시장의 독특한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국내 외국인근로자들은 사회 연결망의 수준 또는 구조와 상관없이 취업이 가능하다. 심지어 사회연결망이 없이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취업을 할 수 있다. 그들의 임금수준도 거의 동질적이다. 따라서 개인의 연결망이 취업과 임금수준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본 분석을 통해서 보면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주로 근로시간, 근속기간, 이직빈도와 같은 변수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지역단위 민족집단 공동체의 형성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정기선 외, 2012a, 박세훈 2010). 주로 개인차원에서 친목모임 수준으로 사회연결망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친족 연결망도 부분적으로 확인되지만 아직 단편적이다. 연결망을 활용하여 이직을 하는 비중도 전체 응답자 중 31%로 높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의 사회자본의 수준이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유의미한 기능을 하기에는 시기상조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표 4~9>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회사의 규모 및 업종을 모두 통제하여 분석했을 때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표 9> 임금수준에 대한 사회연결망의 효과 중다회귀분석 결과

[illegible]

입국전취업상태	.018	(.02)	.018	(.02)	.016	(.02)	.016	(.02)	.017	(.02)	.014	(.02)
근로관련 변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002***	(.00)	.002***	(.00)	.002***	(.00)	.002***	(.00)	.002***	(.00)	.002**	(.00)
현 회사 근무기간	.001**	(.00)	.001**	(.00)	.001**	(.00)	.002***	(.00)	.002***	(.00)	.002**	(.00)
사회인구학적 변수												
베트남	-.001	(.02)	.006	(.02)	.002	(.02)	-.009	(.02)	-.003	(.02)	-.006	(.02)
필리핀	.027	(.02)	.038†	(.02)	.032	(.02)	.023	(.02)	.035†	(.02)	.029	(.02)
인도네시아	.047†	(.02)	.043†	(.02)	.046†	(.02)	.043†	(.02)	.038	(.02)	.041†	(.02)
스리랑카	.051*	(.02)	.051*	(.02)	.052*	(.03)	.044†	(.02)	.045†	(.02)	.045†	(.02)
몽골	-.004	(.03)	-.005	(.03)	-.003	(.03)	-.001	(.03)	-.003	(.03)	-.001	(.03)
성별	.000	(.02)	.002	(.02)	.001	(.02)	.007	(.02)	.008	(.02)	.007	(.02)
혼인상태	.000	(.02)	.003	(.01)	.000	(.02)	-.001	(.02)	.002	(.01)	-.001	(.02)
연령	.000	(.00)	-.001	(.00)	.000	(.00)	-.001	(.00)	-.001	(.00)	-.001	(.00)
(상수)	4.614***	(.07)	4.637***	(.08)	4.620***	(.08)	4.604***	(.07)	4.626***	(.08)	4.606***	(.08)
N	669		684		669		672		687		672	
F	3.308		3.620		2.859		3.396		3.674		2.961	
R ²	.093		.098		.096		.103		.109		.107	

주: 1) † $p < .1$, * $p < .05$, ** $p < .01$, *** $p < .001$ 양측검증

- 2) 자발적 이직(자발적 이직=1, 이직경험 없음=0); 자발적 이직+공식경로(자발적 이직+공식경로=1, 이직경험없음=0); 자발적 이직+비공식경로(자발적 이직+비공식경로=1, 이직경험 없음=0); 1번째+공식경로(1번째+공식경로=1, 이직경험 없음=0); 1번째+비공식경로(1번째+비공식경로=1, 이직경험 없음=0); 2번째 이후+공식경로(2번째 이후+공식경로=1, 이직경험 없음=0); 2번째 이후+비공식경로(2번째 이후+비공식경로=1, 이직경험 없음=0); 자국인 단체참여(자국인 단체참여=1, 아무 단체도 없음=0), 한국인 단체참여(한국인 단체참여=1, 아무 단체도 없음=0), 관계이질성 0.5 미만(관계이질성 0.5 미만=1, 관계이질성 0.5 이상(관계이질성 0.5 이상=1, 관계이질성 0=0); 교육수준(무학 1 ~ 대학원이상 7); 입국전 취업상태(입국전 취업상태=1, 무작·실직=0); 국적(베트남=1, 필리핀=1, 인도네시아=1, 스리랑카=1, 몽골=1, 태국=0); 성별(남자=1, 여자=0); 혼인상태(기혼·동거·사별·이혼·별거=1, 미혼=0); 회사규모(5인~9인이하, 10인~29인이하, 30인~99인이하, 100인~300인이하=1, 4인 이하=0); 업종대분류(섬유봉제, 목재가구, 석유화학, 금속기계, 전기전자=1, 기타산업=0)

V. 결 론

본 논문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이직 문제에 주목하는 것은 이직이 근로조건 개선에 위해서 주로 활용되는 방법이면서도 제도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개인의 사회연결망에 따라 이직의 발생여부와 그 결과가 분명하게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근로자들은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취업한 만큼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동안 가능한 더 높은 급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직은 보다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한 차원에서 활용되는 하나의 선택지가 된다. 제한된 체류기간 내에 최대한의 소득을 올려야 하는 조건하에서 사업장 변경 즉 이직은 그들의 취업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 중에 하나임이 분명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외국인근로자 임금수준은 근무시간과 근속기간에 따라 구조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회사의 규모나 직종은 임금수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에서도 자발적으로 이직을 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전혀 이직을 한 적이 없는 근로자보다 평균 임금 수준이 높았다. 단, 이직의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임금수준이 오히려 낮았다. 이직이 임금상승에 효과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첫번째 이직에만 한정되는 것이었다. 잦은 이직은 오히려 성공적인 성과를 내는데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이직에 따른 임금상승 효과는 인적연계 등 비공식 경로를 통했을 때에는 사라졌다. 오히려 고용센터를 통해 새로운 직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임금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상승 효과는 공식 경로를 통한 경우에서만 나타나고 비공식 경로를 통한 경우에는 없어졌다. 마지막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연결망의 특성과 그들의 임금수준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근로자의 임금결정 구조가 동질화 되어있고 개인 간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거의 전원 취업상태에 있다. 새로운 일자리는 사회연결망의 구조에 거의 의지하지 않고서도 공식기관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임금수준은 구조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고 이직을 통한 임금상승 효과도 발견되지만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이

때문에 임금수준에 대한 사회연결망의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국내 외국인근로자들은 민족집단 공동체 또는 민족적소와 같은 이주자 특유의 사회자본이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은 대부분 사업장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거주하고 사회적 관계가 매우 단편적이며 사회적 관계도 단순 친목모임 정도로 구조화된 형태가 아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3년~5년 정도의 단기 체류에 그친다. 따라서 거주자 집단으로서 발전되는데 한계가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도 사회연결망이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사회적 지원을 받는데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된다. 하지만 그것이 외국인근로자 개인의 소득수준을 결정지을 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이 가진 한계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직에 따른 임금수준 변화를 횡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임금변화와 관련된 변수들은 시간적인 차원에서 지속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횡단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게 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데 있어 논리적인 비약이 존재할 수 있다. 직장을 이동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작업숙련도나 경력 등이 우수한 사람일 수 있는 등 외생적으로 관찰되지 않은 특성들이 반영될 수 있다. 그래서 시계열적으로 직장을 이동하지 않은 사람들의 임금변화를 기회비용으로 고려하여 이동한 사람들과의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직 국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종단자료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횡단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불가피하다. 본 분석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정한·양유민. 2013. “사회적 연결망의 동원이 장애인의 취업과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23(2): 29-51.
- 금재호·조준모. 2002. “실업자의 재취업과 직장상실비용.” 《경제학연구》 50(1): 209-241.
- 김성훈. 2003. “취업자의 사회연결망 활용에 대한 영향 요인 연구.” 《노동경제논집》 26(3) :
209-230.
- 김성훈. 2005. “사회연결망과 공식 경로를 통한 첫 취업의 개인적 결과와 사회적 결과.” 《한국
사회학》 39(1): 53-85.
- 김혜원·최민식. 2008. “직장이동의 유형에 따른 단기임금변화.” 《노동경제논집》 31(1): 29-57.
- 박경태·설동훈·이상철. 1999. “국제 노동력 이동과 사회적 연결망: 경기도 마석의 필리핀인 노동
자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3(겨울호): 819-849.
- 박세훈. 2010. “한국의 외국인 밀집지역 : 역사적 형성과정과 사회공간적 변화.” 《도시행정학보
23(1): 69-100.
- 석현호. 2003. “국제이주이론의 검토” 석현호·정기선·이정환·이혜경·강수돌.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지식마당. pp.13-48.
- 설동훈. 1996.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수준 결정의 역동성, 1992~1996년: 한국의 사례.” 『1996년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한국사회학회. pp. 3-17 (아주대학교 다산관,
1996.12.6.)
-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 유길상·이규용. 200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이경상. 2001. “취업시장에서의 개인적 연결망의 특성과 직업성취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
학원 사회학 박사 학위논문(미간행).
- 이규용·박성재. 2011. “제3장 외국인력 공급 특성 변화분석.” 이규용·이승렬·박성재·노용진, 『외
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pp. 5-52.
- 이정환·김석호. 2010.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고용실태 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 이혜경. 2003.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석현호·정기선·이정환·이혜경·강수돌. 『외국인노동자
의 일터와 삶』. 지식마당. pp.167-202.
- 정기선·강동관·김석호·설동훈·이규용. 2010. 『2010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고용허가제와 방문취
업제 외국인의 취업 및 사회생활』. 법무부.
- 정기선·강동관·오정은·조영희·최서리·오인규·김혁래. 2012. 『경기도내 외국인 밀집지역 현황 분
석 및 의제 발굴』. IOM이민정책연구원.
- 정기선·오정은·김환학·최서리·신예진. 2012. 『이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 정책 연구』.
행정안전부.
- Agrest, Alan. 2002. *Analysis of Ordinal Categorical Data* (2nd edition). NJ: Wiley.
- Aguilera, Michael B. 2003. “The Impact of the Worker: How Social Capital and Human

- Capital Influence the Job Tenure of Formerly Undocumented Mexican Immigrants.” *Sociological Inquiry* 73(1): 52-83.
- Aguilera, Michael B. 2005.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the Earnings of Puerto Rican Migrants.” *The Sociological Quarterly* 46: 569-592.
- Aguilera, Michael B. 2008. “Personal networks and the incomes of men and women in the United States: Do personal networks provide higher returns for men or women?”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26: 221-223.
- Aguilera, Michael B. and Douglas S. Massey. 2003. “Social Capital and the Wages of and Mexican Migrants: New Hypotheses and Tests.” *Social Forces* 82(2): 671-701.
- Antoninis, Manos. 2006. “The Wage effects from the use of personal contacts as hiring channel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59: 133-146.
- Bailey, Thomas and Roger Waldinger. 1991. “Primary, Secondary, and Enclave Labor Markets: A Training Systems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4): 432-445.
- Borjas, George J. 1978. Job Mobility and Earnings over the Life Cycl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No. 233.
- Burt, Ronald S. 1992.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urt, Ronald S. 1997. “The Contingent Value of Social Capital.”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2(2): 339-365.
- Drentea, P. 1998. “Consequences of women's formal and informal job search methods for employment in female-dominated jobs.” *Gender and Society* 12: 321-338.
- Granovetter, Mark.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360-1380.
- Granovetter, Mark. 1995. *Getting a Job: A Study of Contacts and Career*. 2nd e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uffman, Matt L. and Lisa Torres. 2001. “Job Search Methods: Consequences for Gender-Based Earnings Inequal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8: 127-141.
- Keith, Kristen and Abigail McWilliams. 1995. “The Wage Effect of Cumulative Job Mobility.”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49(1): 121-137.
- Light, Audrey. 2005. “Job Mobility and Wage growth: evidence from the NLSY79.” *Monthly Labor Review February*: 33-39.
- Marsden, Peter V and Elizabeth H. Gorman. 2001. “Social Networks, Job Changes, and Recruitment.” pp. 467-502 in *Sourcebook of Labor Market : Evolving Structure and Process*. edited by Ivar Berg and Arne L. Kalleberg. New York: Klumer Academic/Plenum Publishers.

- Mcpherson, Miller and Lynn Smith-Lovin. 1982. "Women and Weak Ties: Differences by Sex in the Size of Voluntary Organizatio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7(4): 883-904.
- Mcpherson, Miller and Lynn Smith-Lovin. 1986. "Sex Segregation in Voluntary Associa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1(1): 61-79.
- Mcpherson, Miller and Lynn Smith-Lovin and James M. Cook. 2001. "Birds of a Feather: Homophily in Social Network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 415-444.
- Mincer, J. and Jovanovic, B. 1981. "Labor Mobility and Wages." *Studies in Labor Markets*, edited by Sherwin Rose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ontgomery, James. 1992. "Job Search and Network Composition: Implications of The Strength-of-Weak Ties Hypothe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7(4): 536-596.
- Mouw, Ted. 2003. "Social Capital and Finding a Job: Do Contacts Matte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8(6): 868-898.
- Mouw, Ted. 2004. "The Use of Social Networks among Hispanic Workers: An Indirect Test of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Paper presented at the Population Studies Center Colloquium Series at University of Pennsylvania, US. November 1st, 2004.
- Parks-Yancy, Rochelle. 2006. "The Effects of Social Group Membership and Social Capital Resources of Careers." *Journal of Black Studies* 36(4): 515-545.
- Portes, A. and Robert L. Bach. 1985. *Latin Journey: Cuban and Mexican immigrant in the United State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ortes, A. and Leif Jensen. 1989. "The Enclave and the Entrants: Patterns of Ethnic Enterprise in Miami before and after Mariel."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6): 929-949.
- Portes, A. and Julia Sensenbrenner. 1993. "Embeddedness and Immigration: Notes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Economic Action."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6): 1320-1350.
- Sanders, Jimmy M. and Victor Nee. 2002. "Asian Immigrants' Reliance of Social Ties in a Multiethnic Labor Market." *Social Forces* 81(1): 281-314.
- Waldinger, Roger. 1994. "The Making of an Immigrant Niche." *International Migrant Review* 28(1) : 3-30.
- Waldinger, Roger. 1997a. "Black/Immigrant Competition Reassessed: New Evidence From Los Angeles." *Sociological Perspectives* 40(3) : 365-386.
- _____. 1997b. "Social Capital or Social Closure? Immigrant Networks in the Labor Market." *Working Paper Series*. The Ralph and Goldy Lewis Center for Regional Policy Studies, UCLA School of Public Affairs, UC Los Angeles.

Effects of Social Networks, Turnover and Job Search Method to Wage among Foreign Workers in Korea

Hyung-gi Park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foreign workers may achieve higher wage through turnover and how their social network and job search method affects their current wage under “Employment Permit System(EPS)” in Korea. The data analysed in this study is from the 『2010 Survey on Employment and Living Conditions of Migrant Workers in Korea』 conducted by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The data include 776 migrant workers from Vietnam, Philippine, Indonesia, Thailand, Sri-Lanka and Mongolia. Through this work, I can find followings. Firstly, The average wage of migrant works who have experience of voluntary turnover is higher then who haven't. But the wage effect of voluntary turnover is efficient just only first turnover or using formal method but if the number of turnover may be cumulated or using human networks, the effect is disappeared; rather it become lower. Secondly, any statistical relationship dose not be found between the structure of social networks and wage. The only significant variables are working time and tenure. Therefore, I can reconfirm that the wage of foreign works is just decided by institutional structure of EPS but their human capital or social networks. It can show that their communities is not mature to be a social capital in Korea yet.

Key Words: Foreign Workers, Social Network, Job search method, Turnover, wage effect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

국가자긍심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별적 효과를 중심으로*

윤혜수**

이 연구는 소득수준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국가자긍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소득수준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정적(+) 인과관계가 나타났다. 즉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도 낮았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도 함께 높아졌다. 이는 기존의 현실경쟁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였다. 다음으로 소득과 다문화수용성에 국가자긍심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회귀분석 결과, 소득과 국가자긍심을 곱한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때 저소득층집단에서 국가자긍심의 조절효과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가자긍심이 강한 집단의 경우 상호작용항을 넣지 않았을 때와 동일하게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낮았고, 소득수준에 올라감에 따라 높은 다문화수용성을 보였다. 반면 국가자긍심이 약한 집단의 경우 방향성이 역으로 나타났는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오히려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졌고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이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을 분석할 때 국가자긍심이라는 차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주제어: 다문화주의, 다문화수용성, 국가자긍심, 현실경쟁이론

* 이 연구에 도움을 주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김석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I. 서론

이 연구는 21세기 전반 동안 전지구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한국사회에 촉발되었던 다양한 논의 중에서도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¹⁾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²⁾에 주목한다. 이러한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데에는 한국사회에서 타자와의 직간접적 접촉과 조우가 전례없이 빈번하게 되었다는 시대적 변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전지구화라는 거시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지구화의 여파로 인한 사회변동은 다문화수용성과 국가정체성이라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를 긴밀하게 연동시키기 때문이다. 이제 이민과 이주의 흐름을 제어할 수 없는 양상으로 전 세계의 국내외 이주자 수는 10억 명에 이르고 그중 국제이주자는 2억 3천만 명 이상이다(국제이주기구, 2013). 증가하는 이주로 인하여 호주나 캐나다, 미국과 같은 전통적 이민국가들 이외에 상대적인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해오던 국가들까지도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멈출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국가들로 하여금 다문화주의를 수용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기존의 민족과 국민이 등치되었던 국민국가 단위의 정체성을 위협하며 충돌을 야기한다. 다문화주의로의 흐름이 한국보다 빨랐던 유럽의 경우, 다문화주의를 표방한 사회통합에 난관을 겪으며 영국의 보수당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총리나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가 공식적으로 이민자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거나 다문화정책의 실패를 선언했다. 프랑스 역시 샤를리 엽도(Charlie hebdo) 사건 이후 국민전선 민족주의 극우 정당의 지지율이 현저히 증가하는 등 프랑스의 국가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재촉받되었다. 이와 같은 유럽의 선례는 사회통합을 이루지 못한 채 진행되는 다문화주의가 극단적인 폭력시위나 집단적 혐오감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시사해준다.

1) 다문화에 대한 논의는 다문화주의, 다문화담론, 다문화정책, 다문화사회 등 여러가지 접미사와 함께 응용된 형태로 전개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를 “한국사회 내 이주민 및 외국인의 급증” 문제로 제한하여 다루기로 한다.

2) 여기에서 national identity 는 국가정체성으로 번역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국민정체성’으로 사용된 경우가 다수 있었으나, 국민정체성으로 번역할 경우 국민의 자격요건에만 지나치게 강조점을 두는 경향을 피하고자 국민 대신 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한국 역시 꾸준히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증가하여, 2015년 5월 기준 185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 10.0%가량 증가한 수치다(법무부 통계월보, 2015). 외국인집단 중 이주노동자 집단이 약 67만 명, 다문화가족구성원인 결혼이주여성 및 그 자녀의 수도 약 21만 명을 넘어섰다(법무부 외국인정책과, 2012). 이제 전체인구의 5%가 외국인인 다문화사회로 진입이 임박해진 것이다. 늘어나는 외국인 유입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는 2004년 무렵부터 다문화정책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시켰고, 이에 따라 국민국가의 관점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 주창되었다. 한편 시민사회에서는 보편적 인권 담론이라는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의 명목으로서 다문화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왔다(윤인진, 2006). 그 결과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는 정책, 교육, 담론 등을 통해 타인종 및 타문화에 대한 개방적이고 존중어린 태도를 갖추는 것이 사회통합과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새로운 시대에 요청되는 덕목으로 지시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향후에도 심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국이 오랜 기간 이민국가가 아닌 민족국가로 존재해왔다는 점, 혈통을 중시하는 단일민족 전통이 강했다는 점,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들 중 다수가 3D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에 집중되어있다는 점, 외국인에 대한 위계적 인식 및 혐오나 차별이 여전히 중요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한국인들이 다문화에 대해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세부적으로 고찰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득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때 한국인들의 국가자긍심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II. 이론적 검토

1. 다문화수용성의 결정요인으로서 소득의 중요성

한국사회에 체류외국인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사회집단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가 어떠한가에 대한 관심 역시 함께 형성되었다. 이러한 관심이 일군의 경험연구에서 다문화수용성이라는 개념으로 포착되고 설명되어왔다. 다문화

수용성이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서로 다른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정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윤인진·송영호, 2009). 또한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민족, 인종의 공존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태도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황정미·김이선·이명진·최현·이동주, 2007). 즉 다문화수용성이라는 개념에서는 비교적 동질적인 민족과 문화를 가진 내집단의 구성원들이 외집단이라고 간주되었던 이민자들을 내집단의 일부로 받아들이거나,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한 사회 내에 공존하는 것을 지지하는 인식이나 태도가 중요하다.

그렇기에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논의는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라는 차원에서 인종주의나 외국인 혐오, 사회적 거리감과 함께 다루어졌다(황정미 외, 2007; 김석호, 2012, 2013). 특히 다문화수용성은 이주민에 대해서 느끼는 위협의 정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강조되었다(황정미, 2010; 윤인진·송영호, 2011). 윤인진·송영호는 이주민에게 느끼는 위협의식이 이주자에 대한 배타적이고 불관용적인 태도로 이어진다는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경쟁의 원천에 따라 외부 위협과 인지된 위협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그중에서도 외국인 이주자들과 비슷한 조건에서 일자리나 생업을 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협은 실질적 경쟁(Blacklock, 1967), 현실적 위협(Stephan and Stephan, 2001), 현실 경쟁(Coenders, Lubbers, and Scheepers, 2003) 등으로 설명되었다. 또한 이들은 이민자들과 실질적인 이익을 두고 경쟁하지 않을 때에도 이민자로부터 초래되는 위협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차원이 인지된 위협으로 구분된다. 한편 전통적인 이민국가로 분류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개인의 사회경제적 요인 및 노동시장에서의 위치에 따라 이민자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지목되었다(Scheve and Slaughter, 2001).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비슷한 종류의 일자리를 둘러싼 고용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저숙련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과 임금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저숙련된 노동자일 수록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설명은 인종차별이 이주민이 집단과 원주민 집단 간의 경쟁과 현실적인 이익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인종차별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이주민의 증대는 실제로 원주민

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키므로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이주민을 내보내거나 그들의 이익을 축소시켜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서구사회에서 주로 제기되고 검증되었던 현실갈등이론에 따르면,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이 낮고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주민, 소수인종과 고용기회, 경제적 이익을 두고 경쟁해야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배제적인 태도가 강하게 나타난다(황정미 외, 2007). 또한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교적 새로운 현상인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용도가 낮을 수 있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한편 역으로, 오히려 비슷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이주민이나 인종적 외 집단과의 접촉 빈도 및 교류의 기회가 많아 편견이나 차별의식이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예상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이중적 현실을 드러낼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소득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해야 한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중 대다수가 중국 또는 필리핀,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에서 유입되고 있으며 그들이 저숙련노동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주민과 현지인의 경쟁구도나 위협의식이 생길 수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민자들이 차지하는 저숙련노동은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직업에 집중되어 있어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둘러싼 경쟁은 크지 않은 것으로도 생각된다. 때문인지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목되었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주요 결정변인은 교육수준, 연령, 이념이 있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이념이 진보에 가까울수록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내지 관용도가 높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수준은 다문화수용성이 미치는 결정변수로 강조되었다(이자형·김경근, 2012).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SES)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행위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많지 않았고, 몇몇 연구는 소득수준이 다문화수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황정미 외, 2007; 윤인진·송영호, 2009; 장승진, 2010). 다만 2011년 황정미의 연구에서 가구소득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에 분화가 나타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중간층의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반면, 저소득층이나 최고 소득층의 양극단에서는 다문화수용성이 뚜렷하게 낮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정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은 그리 오랜 역사를

갖지 않는다. 참여정부 이후부터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이주민에 대한 포용적 태도 및 다문화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법무부, 2010). 이러한 적극적인 다문화정책의 실행은 사회적 합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 저소득층에서는 노동시장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복지의 차원에서 이민자 집단을 경쟁상대로 여길 수 있고, 고소득층에서는 세금증가의 원인으로 이민자 집단에게 화살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소득수준 변수는 여전히 다문화수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관련된 선행연구가 많지 않다는 문제의식 하에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정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약 5-6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2010년의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인들의 소득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을 분석한다.

2. 국가자긍심과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수용성 논의의 맥락에서, 이주민이나 인종적 소수자 집단을 대하는 태도를 연구할 때 중요한 또 다른 이론적 논거는 바로 사회정체성이론이다. 사회정체성이론은 내집단, 즉 자기가 속한 민족·인종집단을 우월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외집단 즉, 다른 민족·인종집단을 도덕적 문화적으로 열등하게 인식하는 태도가 종족적 배제주의를 강화한다고 설명한다(황정미 외, 2007). 사회정체성이론에서 내집단과 외집단의 경계 및 위계 설정의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결국 다문화수용성이 ‘우리’와 ‘그들’이라는 양분된 정체성의 바탕에서 얼마나 ‘그들’을 ‘우리’와 동등한 상대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과의 공존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논의가 국가정체성, 특히 국민정체성과의 연관 속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도 바로 이러한 까닭이다. ‘그들’에 대한 인식 및 태도는 ‘우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의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정체성 연구는 대체로 두 갈래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전통적으로 존재해온 단일민족이라는 한국인의 혈통중심적 인식을 염두하여, 자민족중심주의나 단일민족자긍심을 주요 변인으로 삼은 경우(윤상우·김상돈, 2010; 황정미, 2010)이고, 다

른 하나는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국민의 자격요건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거나 핵심 설명 변수로 다룬 경우(강원택, 2007, 2011; 설동훈·정태석, 2002; 최현, 2007; 장승진, 2010; 윤인진·송영호, 2011)이다. 특히 국민정체성에 관한 많은 연구가 Smith의 주장을 한국사회에 적용하여 국민의 자격요건이 혈통을 중시하는 종족적 정체성에 대한 강조에서 시민적 정체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문화수용성과 관련해서는 종족적 정체성에서 시민적 정체성으로의 국민정체성 변화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상반된 영향력이 주로 검증되었다. 즉 시민적 정체성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수용하되,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국가정체성의 여러 가지 차원 중 국민자격요건이 아닌, 국가자긍심에 집중하고자 한다.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정체성을 설명할 때, 정치적 시티즌십(citizenship)을 다루는 국민의 자격요건 이외에도 내집단에 대한 자부심이나 애착과 같은 감정적 차원을 고려하는 것 역시 동등하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집단에 대한 감정적 태도가 외집단에 대한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고려가 필요한 요인이다. 국가자긍심이란 일반 사람들이 자신의 국가정체성에 근거하여 국가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한다(Smith and Kim, 2006).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이 국가에 대해, 이 연구의 경우 한국인이 대한민국에 대해 얼마나 자랑스러움을 느끼는가를 측정하는 국가자긍심 항목은 지금보다 더욱 자세히 다문화수용성과 국가정체성 논의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황정미, 2011 참조³⁾). 가령 국가에 대한 강한 자긍심은 타민족과 타인종에 대한 배타적 태도나 위계적인 우월감으로 귀결될 수 있으며, 한편으론 긍정적인 자신감으로 작동하여 관용적인 태도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가자긍심은 국가에 대한 일반적인 자랑스러움을 측정하는 일반적 국가자긍심과 영역 별로 자랑스러움을 측정하는 영역 별 국가자긍심으로 나뉜다. 일반적 국가자긍심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의미에서 자신의 국가를 더욱 선호

3) 여기에서 그는 국가자부심이라는 차원과 다문화수용성이 다각도로 함께 분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분석은 “동질성에 기초한 공동체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국가정체성이 어떻게 변화 혹은 분화될 것인가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한다는 의미가 더 명시적으로 드러난 문항들로 구성되는 반면, 영역 별 국가자긍심은 특정 분야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중립적으로 묻는다. 여기에서는 두 가치 차원 중 후자에 주목한다. 추상도가 높은 일반적 국가자긍심보다는 영역별 국가자긍심을 합산한 것이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긍심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김석호, 2012).

구체적으로 국가자긍심은 다문화수용성에 강한 영향을 가질 것인데, 이러한 영향은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소득효과를 조절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즉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그가 자신이 속한 내집단, 즉 국가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가의 정도에 따라 외집단을 얼마만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있으리라는 것이다. 내집단에 대한 자랑스러움의 감정은 단순히 자랑스러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그들’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타인을 정당하게 배제할 수 있는 합법적 감정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이때 국가에 대한 자긍심은 순수한 긍지일 수도 있는 한편, 타인에 대한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우월감이 된다. 이러한 감정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라는 집합적인 차원에 기대어 생겨나는 것으로, 개인의 특성인 사회경제적 요인을 상쇄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의 가설과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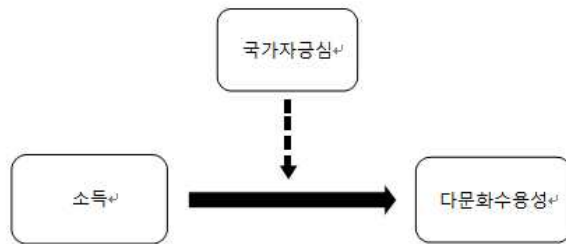
위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제기하는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구체적으로는 소득수준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인가? 현실경쟁이론의 주장대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낮고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외집단에 대한 관용정도가 높아지는가? 나아가 소득수준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개인이 얼마나 국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지에 따라 달라지는가? 다시 말해 개인의 강한 국가자긍심은 경계와 위계를 설정하여, 사회정체성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종족적 배제주

의로 이어져 다문화수용성을 낮추는가? 이러한 질문을 가설의 형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1.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낮을 것이다.

가설2. 소득수준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국가자긍심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가질 것이다.

이를 연구모형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2. 연구자료

이 연구에서는 동아시아연구원이 2010년에 실시한 「한국인의 정체성조사 2010」 자료를 이용한다. 이 조사에는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국가자긍심, 그리고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가 함께 수록되어있어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 조사의 표집은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본추출은 2010년 6월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비례할당한 뒤 무작위추출을 수행하였고 95% 신뢰수준에서 표집오차는 3.1%이다. 조사방법은 조사원 기입방식의 1:1 대인면접으로, 2010년 10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분포는 남성이 49.3%이고 여성은 50.7%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19.4%, 30대가 21.5%, 40대가

22.3%, 50대가 17.2%, 60대가 1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가 49.16%, 강원이 3.3%, 대전/충청이 9.9%, 대구/경북이 10.4%, 부산/울산/경남이 15.8%, 광주/전라가 10.3%, 제주가 1.1%에 해당했다. 지역크기별로 살펴보면 대도시(7대도시)가 46.4%, 중소도시가 36.3%, 읍/면이 17.3%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중졸이하가 16.4%, 고졸이 40.45%, 대학재학 이상이 42.9%의 분포를 보였다. 직업별로는 농/임/어업이 1.9%, 자영업이 19.3%, 판매/영업/서비스가 15.5%, 생산/기능/노무직이 7.7%, 사무/관리/전문직이 22.9%, 주부가 20.3%, 학생과 무직을 포함하여 10.2%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수준별로는 100만원 이하가 5%, 101만원-200만원이 12.7%, 201-300만원이 23%, 301-400만원이 25.3%, 401-500만원이 17.1%, 501-600만원이 10.9%, 601-700만원이 3.6%, 701-800만원이 0.8%, 801-900만원이 0.3%, 901-1000만원이 0.4%, 1001만원 이상이 0.8%로 조사되었다.

3. 변수의 구성과 조작화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다문화수용성이다. 다문화수용성은 다시 다문화지향성과 다문화 폐쇄성이라는 두 가치 차원으로 나뉜다. 이때 다문화지향성은 다문화 및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도를 의미하고, 다문화폐쇄성은 반대로 다문화와 이주민에 대해 폐쇄적이고 입장을 보이는 부정적인 수용도를 의미한다.

각 차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문화지향성은 세 가지 항목을 포함한다. 그 중 “어느 국가든 인종, 종교, 문화가 다양해지면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된다”와 “외국인 이주자들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문화는 풍부해진다”는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태도에서 긍정성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윤인진·송영호(2009)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다문화지향성’ 요인을 참조⁴⁾하였다. 여기에 황정미(2010)가 제안한 다문화수용성 개념 중 ‘보편적 권리수용’을 일부 받아들였다. 그에 따르면 이주민

4) 윤인진·송영호(2009)의 연구에서는 ‘다문화지향성’ 요인을 1)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 공존이 좋다.” 2) “인종, 종교,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면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3) “외국인 이주자가 늘면 우리나라 문화는 더욱 풍부해진다.” 로 측정하였다. 설문지의 차이로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두 문항과 의미 상 유사성이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의 보편적 권리수용은 이주민들에게 한국인과 동등한 기본권의 인정, 출생에 의한 국적 부여,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묻는 항목들로 구성되는데, 여기에서는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이나 사회보장에서 한국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주어야 한다.”라는 항목으로 이를 측정하였다. 위의 각 문항을 ‘매우 그렇다’ (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역코딩한 뒤 합산했다. 즉 다문화지향성은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태도 및 이주민에 대한 보편적 권리수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다문화수용성의 한 차원을 구성한다.

다음으로 다문화폐쇄성은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문항과, 수용을 하더라도 다문화의 동등한 인정보다는 동화주의적 모델에 입각하여 그들의 “전통 및 생활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문항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 황정미(2010)가 제안한 다문화수용성의 ‘집합적 위협인지’라는 차원 또한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집합적 위협인지 항목을 측정하기 위해서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다.”라는 문항과 “외국인이주자들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라는 문항을 포함했다. 마찬가지로 각 항목은 ‘매우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모두 합산하여 다문화폐쇄성 변수를 만들었다. 즉 다문화폐쇄성은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제한적이거나 부정적 입장 및 이주민에 대한 인지위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다문화수용성의 또 다른 차원을 구성한다.

이 연구의 독립변수인 소득수준은 월평균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를 1, 101만원-200만원을 2, 201-300만원을 3, 301-400만원을 4, 401-500만원을 5, 501-600만원을 6, 601-700만원을 7, 701-800만원을 8, 801-900만원을 9, 901-1000만원을 10, 1001만원 이상을 11로 구성하였다. 상호작용항인 국가자긍심은 “귀하는 다음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시나요?”라는 질문에 9개 영역 별 국가자긍심을 4점 척도로 측정한 항목들을 합산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다문화수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목되었던 교육수준과 연령, 이념은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통제변수에는 성별, 거주지, 직업유무를 더했다. 거주지의 경우 도시크기 별로 다문화나 이주민에 대한 접촉빈도수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포함시켰고, 직업은 직종별로 나누기보다는, 일

을 하고 있는지 하지 않는지의 직업 유무 여부로 측정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1>를 참조하면 된다.

<표1> 변수의 구성 및 조작화

변수지위	개념		조작화
종속변수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지향성	-어느 국가든 인종, 종교, 문화가 다양해지면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외국인 이주자들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문화는 더욱 풍부해진다.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이나 사회보장에서 한국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주어야 한다.
		다문화 폐쇄성	-우리나라와 다른 인종, 종교, 문화를 가진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외국인 ‘이주자’들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자신들의 전통이나 생활습관을 버려야 한다.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외국인이주자들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
독립변수	소득수준		100만원 이하=1/ 101-200만원=2/ 201-300만원=3/ 301-400만원=4/ 401-500만원=5/ 501-600만원=6/ 601-700만원=7/ 701-800만원=8/ 801-900만원=9/ 901-1000만원=10/ 1001만원 이상=11
상호 작용항	국가자긍심		민주주의성숙도/국제무대에서정치적위상/경제적성취도/사회보장수준/과학기술수준/스포츠수준/예술과문화수준/군사력수준/역사 à 총9개 영역 별 국가자긍심
통제변수	교육수준		중졸이하=1 / 고졸=2/ 대졸=3
	연령		20대=1/ 30대=2/ 40대=3/ 50대=4/ 60대=5
	성별		여성=0 / 남성=1
	지역크기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명목변수화)
	이념		진보(0-4)=0 / 중도(5)=1 / 보수(6-10)=2
	직업유무		무직(주부+학생+무직)=0 / 유직(그 외)=1

4. 기술통계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는 <표2>와 같다. 다문화수용성의 평균은 22.59점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정부주도로 적극적인 다문화정책을 실시해왔다는 사실에 비

추어보면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한편 국가자긍심은 최대 34점 중 21.28점으로, 한국인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애국심이 높다고 알려진 상식과 비교했을 때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볼 때, 2010년의 영역 별 국가자긍심은 대체로 높아진 수준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영역 별로 조사한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스포츠 > 과학기술 > 역사 > 예술과 문화 > 경제적 성취도 > 한국민의 국민성’이 과반수의 응답비율을 타나냈다.⁵⁾ 반면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적 대우 < 사회보장 수준’은 가장 낮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소득수준에서는 701만 원 이상의 최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세대 중에서는 40대가 가장 많지만 압도적인 수준은 아니라는 점, 이념 중에서는 중도가 가장 두드러진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2> 기술통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N
다문화수용성	22.59	3.22	11	35	1,006
국가자긍심	21.28	3.29	9	34	995

구분	빈도(%)	N
소득	100만원 이하	51(5.09)
	101-200만원	127(12.67)
	201-300만원	231(23.05)
	301-400만원	254(25.35)
	401-500만원	171(17.07)
	501-600만원	109(10.88)
	601-700만원	36(3.59)
	701-800만원	8(0.80)
	801-900만원	3(0.30)
	901-1000만원	4(0.40)
	1001만원 이상	8(0.80)

5) 『ARI EAI 2010년 국가정체성 프로젝트 회의 <자료집>』의 2005년 2010년 조사결과 비교표 참조.

세대	20대	198(19.43)	1,019
	30대	219(21.49)	
	40대	227(22.28)	
	50대	175(17.17)	
	60대	200(19.63)	

구분		빈도(%)	N
교육수준	중졸 이하	167(16.44)	1,016
	고졸	412(40.55)	
	대졸 이상	437(43.01)	
성별	남성	502(49.26)	1,019
	여성	517(50.74)	
지역크기	대도시	473(46.42)	1,019
	중소도시	370(36.31)	
	읍/면	176(17.27)	
이념	진보	280(27.48)	1,019
	중도	433(42.49)	
	보수	306(30.03)	
직업유무	무직	331(32.48)	1,019
	유직	688(67.52)	

IV. 분석결과

이 연구의 두 가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기본모형과 상호작용모형을 구성하였다. 두 모형 모두 다문화수용성을 종속변수로, 소득수준을 독립변수로, 기타변수들을 통제하여 두 변수 간 인과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O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상호작용모형에만 소득수준과 국가자긍심의 상호작용항을 포함시켰다.

먼저 기본모형에서는 독립변수인 소득수준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회귀 분석결과, 아래의 <표3>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소득수준이 다문화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회귀계수의 방향성이 정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낮고,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다문화수용성도 함께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첫 번

제 가설인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낮을 것이다”를 지지한다.

또한 이 결과는 저소득층 집단이 이민자들과 고용기회 등의 경제적 이익을 두고 경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문화수용성이 낮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현실경쟁이론이 큰 틀에서 한국의 사례에서도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월소득 100만원 이하인 집단을 그렇지 않은 집단과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다.”는 항목과 평균비교검정(t-test)을 실시해 본 결과, 3.15점에 비해 3.43점으로 평균은 높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다문화수용성을 낮추고 고소득층의 다문화수용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 설명변수 이외에 연구자가 설정한 통제변수 중에서는 국가자긍심이 다문화수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적 영향력을 미쳤다. 즉 국가자긍심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은 낮았다. 지역크기변수 역시 다문화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다문화수용성이 높게 나타났고, 읍/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다문화수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교육수준이나 연령, 이념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발견할 수 없었다.

<표3>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OLS 회귀분석

	기본모형		상호작용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소득수준	0.30***	0.07	-0.67	0.36
국가자긍심	-0.21***	0.03	-0.40***	0.07
소득수준국가자긍심	-	-	0.05**	0.02
연령	-0.05	0.09	-0.06	0.09
교육수준	-0.14	0.19	-0.15	0.19
성별	-0.03	0.22	-0.07	0.21
읍/면	1.14***	0.29	1.12***	0.29
중소도시	0.63**	0.22	0.66**	0.22
이념	0.12	0.14	0.12	0.14
직업유무	0.17	0.23	0.19	0.23
상수	25.7388***		29.5992***	
N	967		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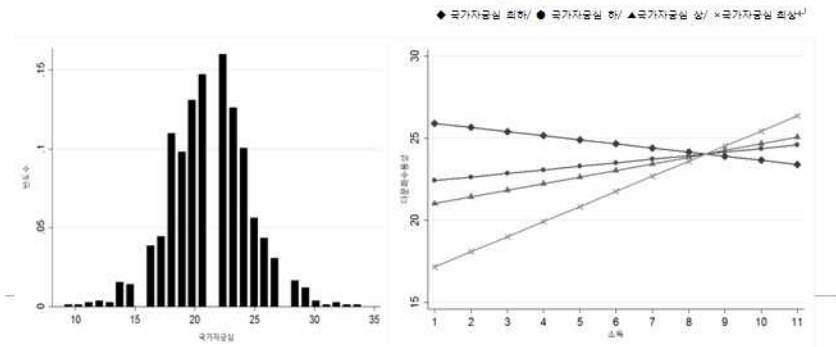
R-squared	0.0866	0.0936
-----------	--------	--------

*** $p < 0.001$, ** $p < 0.01$, * $p < 0.05$

종속변수: 다문화수용성

다음으로는 소득수준에 국가자긍심을 곱한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한 단계 발전된 상호작용모형에 대한 O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소득과 다문화수용성에 국가자긍심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 결과, 국가자긍심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소득수준의 경우 독립적인 유의미한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요 관심의 대상인 소득수준과 국가자긍심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드러나 연구의 두 번째 가설,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소득수준은 국가자긍심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지지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국가자긍심의 회귀계수와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의 방향성의 차이다. 국가자긍심만을 떼어놓고 보면, 국가자긍심은 다문화수용성에 대해 부정(-) 영향력을 미친다. 즉, 국가자긍심이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은 높아지고 국가자긍심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은 낮아진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국가자긍심이 위계적 우월감을 느끼는 애국심이나 배타적 민족주의 정서로 이어져 다문화수용성을 낮출 수 있다고 쉽게 예상되기에,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소득수준을 곱한 상호작용항을 넣으면,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회귀계수의 방향성이 급격히 정적(+)으로 변화한다. 즉 국가자긍심이 소득수준의 영향력을 조절하여 방향성이 바뀐다. 상호작용항의 조절효과가 미치는 소득수준의 차별적 영향력은 아래의 <그림1>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림1> 다문화수용성: 국가자공심에 따른 소득의 차별적 효과



위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먼저 국가자공심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국가자공심의 최솟값 9점, 최댓값 34점 중 평균값은 21.3점이었다. 조절효과 그래프는 국가자공심의 최솟값과 최댓값, 그리고 상위 25%와 하위 25%에 해당하는 19점과 23점을 구분해서 그렸다. 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높은 국가자공심이 낮은 국가자공심보다 소득효과를 더욱 강하게 조절한다는 것인데, 이는 기울기를 통해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석해보면 국가자공심이 높은 집단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낮게 나타났고,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수용성도 높아졌다. 이것은 상호작용항을 넣지 않았을 때와 같은 결과이다. 즉 높은 국가자공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득이 낮은 사람은 다문화수용성이 낮다. 사회정체성이론에서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집단에 대한 강한 애착 및 우월감이 종족적 배제주의로 이어져 이주민집단에 대한 배제로 나타나는 것과 동시에 이주민집단과 유사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위협의식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이주민집단은 고용기회 뿐만 아니라 복지혜택을 두고도 경쟁의 상대자로 간주될 수 있다. 높은 국가자공심을 가지고 있지만 소득이 높은 사람의 경우, 한국에 대한 자공심이라는 사회정체성보다는 개인의 특징인 사회경제적 지위가 강력하게 작용하여 이주민집단에 대한 배제적 경향성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관용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소득집단의

국가에 대한 자긍심은 배타적 태도보다는 이주민집단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져 관용적 태도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반면 흥미로운 것은 국가자긍심이 낮은 집단이었다. 국가자긍심이 낮은 집단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낮았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오히려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기존의 정적이었던 소득효과가 부적으로 뒤바뀐 것이었다. 국가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느끼지 않는 저소득층은 현실경쟁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처럼 이주민집단과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경쟁적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다문화수용성을 나타냈다. 저소득층이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이유는 그들과의 유사한 노동 및 거주환경과 경제적 상황에서 동질감을 느끼거나 빈번한 접촉 및 교류를 통해 편견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국가자긍심이 낮으면서 고소득층인 집단은 낮은 다문화수용성을 보였는데, 고소득층의 경우 교육효과로 인해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이 낮추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 특기할 만했다. 즉 위의 결과들을 통해 국가자긍심에 의해 소득수준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영향력이 크게 조절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 소득수준 별 최솟값과 최댓값의 격차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소득수준이 100만 원 이하인 집단은 가장 격차가 큰 집단으로 다문화수용성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가 8.73점에 달했다. 즉 국가자긍심의 조절효과는 저소득층 집단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관찰된다. 대한민국을 자랑스럽다고 생각할 때 소득수준이 낮으면, 단순히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기보다는 그것이 사회적 정체성 이론에서와 같이 위계적인 우월감이나 배타적인 자민족중심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자긍심이 강하면서도 동시에 소득수준이 낮을 경우 다문화수용성의 평균인 22.59점에 훨씬 못 미치는 17.16점으로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이다. 오히려 국가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집단에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25.90점으로 크게 높아졌는데, 소득이 낮은 경우라도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크지 않은 경우 다문화나 이민자에 대해 오히려 개방적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점은 소득수준이 낮을 경우 다문화수용성이 낮을 것이라는 기존의 이론과 가설1의 결과에 대한 수정과 정교화된 해석을 요구한다. 즉 소득수준이 낮더라도 국가자긍심의 정도에 따라 높은 다문화수용성

을 가질 수 있다.

한편 소득수준이 올라 701-800만원 구간에 이르기까지 국가자긍심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이 조절되는 정도가 점차 약화되었다. 가령 701-800만원의 집단에서는 국가자긍심이 최하인 경우와 최상인 경우, 다문화수용성의 격차가 0.55점 밖에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8(701-800만원)에서 9(801-900만원)로 바뀌는 지점에서 그래프가 교차되며 방향성이 바뀌는 것은 눈여겨 볼 만하다. 고소득층일수록 높았던 다문화수용성이 국가자긍심의 강력한 영향을 받아 역으로 이 구간에서는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부터는 다시 국가자긍심의 조절효과가 강하게 나타나 다문화수용성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초고소득층 집단인 1001만원 이상의 구간에서는 국가자긍심이 최하인 경우 다문화수용성이 23.39점이었고, 국가자긍심이 최상이었을 때 26.34점으로 급격히 높아졌다. 고소득층에서는 일반적으로 높은 다문화수용성이 기대되는데, 국가자긍심이 낮은 경우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부분의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흥미로운 대목이다. 황정미(2011)는 고소득층이 이주민의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정책 등에 대해 세금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에 다문화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해석을 제안한 바 있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해석은 국가자긍심에 의한 조절효과를 설명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세금부담을 고려하고서라도, 국가자긍심이 높은 경우에는 여전히 고소득층에서 가장 높은 다문화수용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국가자긍심이 높은 집단의 경우, 소득수준도 동시에 높았을 때 한국에 대해 느끼는 자랑스러운 감정이 자신감으로 이어져 다문화와 이주민에 대한 관용도를 높였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대로 소득이 높은 사람 중 국가자긍심이 낮은 사람은, 한국에 대한 열등감 내지는 한국이 뒤쳐져 있다는 인식 때문에 이에 더해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강화되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도전이자 추가적인 짐으로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수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로 이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1001만원 이상의 초고소득층 집단의 숫자가 매우 적다는 사실 역시 염두해야 하는 부분이다.

요컨대 상호작용모형의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소득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국가자긍심의 정도에 따라 차별적이라는 것이다. 국가자긍심의 조절효과는 저소득층 집단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확인되었다. 국가자긍심이 높은 집

단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낮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다문화수용성도 높아졌다. 반면 국가자긍심이 낮은 집단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낮아졌다. 고소득층 집단에서도 국가자긍심의 조절효과는 확인되었는데, 801-900만 원 이상의 초고소득층 구간에서 다문화수용성의 영향력에 방향성이 바뀌는 점이 주목할 만했다.

V. 결론

이 연구는 소득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을 국가자긍심의 차별적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소득수준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OLS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득수준이 다문화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회귀계수의 방향성이 정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은 낮을 것이다”라는 이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을 지지하였다. 반면, 교육수준이나 연령, 이념 등 선행연구에서 다문화수용성에 영향력을 갖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던 변수들은 이번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소득과 다문화수용성에 국가자긍심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기본모형에 소득과 국가자긍심을 곁한 상호작용항을 넣어 회귀분석을 한 결과,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연구의 두 번째 가설,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소득수준은 국가자긍심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이때 저소득층집단에서 국가자긍심의 조절효과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가자긍심이 강한 집단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낮아졌고, 소득수준에 올라감에 따라 높은 다문화수용성을 보였다. 반면 국가자긍심이 낮은 집단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졌고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이 낮아졌다. 여기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다문화수용성이 낮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국가

자긍심이 낮은 경우에는 다문화주의나 이민자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편 고소득층집단에서는 고소득층이면서 (특히 고학력일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고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자긍심이 낮은 경우에는 다문화수용성이 낮게 나타났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정확한 해석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추후의 연구가 더욱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되었던 국민자격요건 차원을 고려하지 못했고, 다문화수용성 변수를 구성하는 데도 설문지 문항의 제한으로 더욱 다차원적인 측면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다문화정책의 실시와 외국인정책의 변화 등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변동에 따른 새로운 국면을 조명한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소득수준을 연속변수로 가정하고 일직선의 영향력을 검토하는 OLS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소득수준 별 평균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의 지적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 역시 아쉬움으로 남는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그들이 느끼는 국가자긍심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의미변화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은 또 다시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경험연구의 한계 상 드러낼 수 없었다. 이러한 풍부한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경험연구에 더해 면접이나 초점집단인터뷰(FGI)와 같은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보충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변화된 사회적 여건 속에서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이 어떠한지를 소득과 국가자긍심을 통해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소득변수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경우가 비교적 소수였으며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소득의 영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 비해, 이번 연구에서는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소득의 독립적인 영향력이 확인되었다는 점이 유의미했다. 나아가 다문화수용성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국가정체성도 기존에 주목되었던 국민자격요건 이외에 국가자긍심이라는 차원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분석함으로써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 연구에 풍부함을 더했다는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원택. 2007.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대한민국 민족주의,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나남.
- 강원택. 2011. “한국사회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변화.” 강원택·이내영 공편,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정체성』.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pp.11-31.
- 김석호. 2012a.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 그들은 아직도 먼 존재인가?” 『한국의사회동향2012』. 통계개발원. pp.170-179.
- _____. 2012b.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한국인 자랑스러운가? 누가 한국인이 될 수 있는가?” 『한국의사회동향2012』. 통계개발원. pp.180-186 .
- 김석호. 2013. “지식공간이론을 활용한 사회적 거리감 척도의 한국사회에서의 적용가능성.” 《한국인구학》 36(1): 1-20.
- 설동훈·정태석. 2002.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민족정체성의 변화.” 《계간사상》 가을호: 28-52.
- 윤상우·김상돈. 2010. “사회적 가치관이 한국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6(1): 91-117.
- 윤인진·송영호. 2009. “한국인의 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 『한국사회학회 2009 전가사회학대회 — 소통, 연대, 사회통합』. 한국사회학회. pp.579-591.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006·6·19)
- 윤인진·송영호. 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수용성.” 《통일문제연구》 23(1): 143-192.
- 이자형·김경근. 2012.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 결정요인- 교육수준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2(3): 163-192.
- 장승진. 2010. “다문화주의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 경제적 이해관계와 국가정체성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4(3): 97-119.
- 최현. 2007. “한국인의 다문화 시티즌십-다문화의식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5(2): 147-175.
- 황정미·김이선·이명진·최현·이동주.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 다문화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황정미. 2011.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과 국가정체성.” 강원택·이내영 공편,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정체성』.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pp. 189-214.
- 황정미. 2010.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분석 - 새로운 성원권의 정치학.” 《아세아연구》 53(4): 152-184.
- Scheve, Kenneth F. and Matthew J. Slaughter. 2001. “Labor market competition and individual preferences over immigration polic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3

(1): 133-145.

Smith, Tom and Kim, Seokho. 2006. "National pride in comparative perspective:1995/96 and 2003/04."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8(1): 127-136.

(2015. 5. 10. 접수; 2015. 6. 12. 수정; 2015. 6. 23. 채택)

Analysi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interaction effect of National pride

He-su Y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income level to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interaction effect of national pride. According to the studies conducted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where the history of immigration is long and embedded, the income level is a crucial independent variable that determines the attitude to multiculturalism and immigrants. Such research reports that the competition in labor market and struggles among economic interests propel individuals with lower income to obtain negative attitude toward multiculturalism.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if this explanation can be applied to Korea's case where the history of immigration is comparatively shorter and limited. Based on the survey data <Identity of Korean 2010> collected by East Asian Institute, I conducted statistical analysis using OLS regression. The result illustrates that the income level had independent effect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suggesting that the lower the income level is, the lesser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s detected. In other words, the individuals who have higher income tend to be more open and tolerant to multiculturalism while the other individuals with lower income tend to be more closed and exclusive. Moreover, this paper takes step further and argues that the national pride should be considered as importantly in measuring people's attitude toward multiculturalism. With the hypothesis that the national pride is closely interconnected with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e paper examines how national pride interacts between income level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with interaction term shows that the interaction effect of national pride is remarkable, particularly among those

with lower income level. Among the group with strong national pride, the income level is positively related with multicultural acceptability while the other group with weak national pride shows the opposite direction. A finding that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s not only determined by income level, but strongly effected by national pride is an important implication for future research on multiculturalism in South Korea.

key word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National Identity, Multiculturalism, Competition Theory

한국이민학회 정관

제 정: 2007년 2월 2일

제1차 개정: 2009년 7월 1일

제2차 개정: 2010년 6월 14일

제3차 개정: 2013년 4월 1일

【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Association (약칭: KIMSA)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국경을 넘는 인간의 이동에 따른 제반현상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학술활동을 활성화하고 국제학술교류를 촉진하여 인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이민에 관한 연구
2. 국내 및 국제 학술발표회와 토론회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결과물의 간행
4.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5. 기타 학회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 제2장 회원 】

제5조 (회원 구분 및 자격)

- ① 본 학회의 회원은 개인회원, 기관회원 및 도서관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개인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본 학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1. 정회원은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이민과 관련된 분야를 강의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과정 중의 대학원생, 이민분야에 관심이 있는 법조인,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이민분야에 관심을 가진 석사과정의 대학원생으로 한다.
 3. 특별회원은 일반회원 또는 준회원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이민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국제기구 또는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학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에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 특별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박사과정의 대학원생인 경우에는 정회원으로 본다.
- ③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 ④ 도서관회원은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와 연구결과물을 구독하고자 하는 도서관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 ② 회원은 학회지를 무상으로 배부 받는다.
- ③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학회가 주관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학회의 목적과 명예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제명 및 자격정지)

- ①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일을 하였거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 제3장 임원 】

제9조 (임원의 구분 및 임기)

- ①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4인 이내
 3. 총무이사 1인
 4. 편집이사 3인 이내
 5. 연구이사 3인 이내
 6. 감사 2인
 7. 기타 필요에 의해 이사로 선임되는 자.
-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이 전임회장의 유고로 승계한 경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승계한 잔여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0조 (회장의 선출과 명예회장의 추대)

- ①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가 차기 회장이 된다. 단, 제1차 투표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제1차 투표의 최고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표를 얻은 자로 정한다.
- ② 단일후보의 경우에는 가부투표를 실시하며, 총회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선출된다.

제11조(기타 임원의 선출)

- ①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②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권한과 의무)

-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법인의 이사장 및 총회, 이사회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1개월 이내에 차기 회장이 회장의 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총무이사는 학회의 일반운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예산 및 결산, 법인 등록 및

변경, 기타 다른 상임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④ 편집이사는 학회지 및 기타 연구간행물 발간을 담당한다.
- ⑤ 연구이사는 정기학술대회의 기획 및 개최, 기타 학술활동을 담당한다.
- ⑥ 감사는 학회의 예산·결산과 사업을 감독한다.

【 제4장 조직 】

제13조 (총회)

- ① 본 학회의 최고결기구로서 총회를 두며,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 ②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③ 정기총회는 매년 정기학술대회일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정회원 20인 이상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 ④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결한다.
 -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 2. 회장과 감사의 선출
 - 3. 사업계획의 승인
 - 4. 결산의 승인
 - 5. 본 학회의 해산
 - 6. 기타 본 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 ⑤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관의 개정은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본 학회의 해산은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4조 (이사회)

- ① 이사회는 감사를 제외한 제19조 제1항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 ② 이사회는 의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안
 - 2.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정관의 개정안
 - 3.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정회원의 가입자격 인정
 - 4. 제8조에 의한 회원의 제명 및 자격정지
 - 5. 회원에 대한 포상
 - 6. 기타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안건의 심의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④ 이사회 의결은 출석한 임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실무이사회)

- ① 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집행하고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이사회를 둘 수 있다.
- ② 실무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회장이 선임하는 실무이사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 ③ 실무이사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 ④ 실무이사회는 학회 운영을 위한 협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집행해야 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 ⑤ 실무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기획한다.
 - 1. 이사회 및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안
 - 2. 이사회 및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정관의 개정안
 - 3. 회원의 회비
 - 4. 본 학회의 명의로 수행하는 연구수탁사업 등의 전체 사업금액 중 학회귀속분의 비율
 - 5.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⑥ 실무이사회에서의 의결은 출석한 실무이사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편집위원회)

- ① 본 학회의 학회지 및 연구결과물의 간행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이사 중 회장이 임명한다.
- ③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학회지 및 연구결과물의 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연구회 및 연구자문위원회)

- ① 본 학회의 연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공 또는 연구주제별 연구회를 둘 수 있다.
- ② 연구회의 운영은 연구이사가 담당한다.
- ③ 연구이사 및 연구회의 연구기획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연구회와 연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5장 재정 】

제18조 (재산)

- ① 본 학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회원이 납부한 회비
 2. 국가 기타 공공단체의 보조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4. 사업에 따른 수입금
 5.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6. 본 학회의 기금
 7. 기타 수입
- ② 제5조의 회원 구분에 따른 회비의 금액은 실무이사회가 결정한다.

제19조 (재산의 관리)

- ① 본 학회 재산의 보존 및 관리는 회장이 관장한다.
- ② 회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재산의 처분,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2. 제4조 이외의 사업과 관련하여 본 학회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또는 본 학회의 권리 포기하는 행위(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기채(起債) 또는 금전차입(상임이사회가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재정보고) 회장은 결산 등 본 학회의 재정내역을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장 해산 】

제22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3조 (재산귀속)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국가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제 정: 2008년 8월 1일

제1차 개정: 2010년 6월 14일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한국이민학회(이하 학회라 칭함) 정관 제16조에 규정된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 및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편집위원의 임기 및 선임)

- ① 편집위원장은 회장단의 협의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전체 편집위원의 과반수가 동시에 바뀌지 않도록 한다.
- ③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본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이민학》 원고의 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
2. 《한국이민학》의 편집 및 출간
3.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

제5조 (운영)

- ① 본 위원회는 《한국이민학》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평가자를 선임·위촉하고 평가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② 《한국이민학》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접수,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 ③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⑤ 편집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한국이민학회 회장에게 청구한다.
- ⑥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장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 ⑦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으며, 편집간사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제1조 이 내규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이 내규는 총회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이민학》 발간지침

제 정: 2008년 8월 1일

제1차 개정: 2010년 6월 14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이민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이민학》(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접수,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한국이민학》의 발간주기)

- ① 《한국이민학》은 연간 2회(4월 30일, 10월 31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호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한국이민학》의 발간번호는 제○권 제○호로 한다. 《한국이민학》의 발간연도에 따라 “제○권”의 숫자가 순서대로 부여되며, 같은 연도에 발행한 《한국이민학》의 순서에 따라 “제○호”가 부여된다.

제3조 (편집위원회)

- ① 한국이민학회 회칙 제16조에 규정된 편집위원회가 《한국이민학》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접수,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맡는다.
-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및 20명 이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정관 제16조 제2항에 의거 편집이사 중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부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논문투고)

- ① 《한국이민학》에 게재할 논문의 주제는 한국 및 세계의 이민 관련 이론적·경험적 연구여야 하며, 논문투고자의 자격은 회원으로 제한한다.
- ② 논문의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제출된 논문은 국내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현재 게재를 심의 중이어서는 안 된다. 단, 외국어로 작성 되어 저명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로 번역하여 실을 수 있다.

- ③ 논문 제출 시 원고는 워드프로세서(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kjim2014@gmail.com로 투고신청서와 함께 전자메일로 송부한다. 투고신청서는 본 학회 홈페이지(kimanet.org)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원고와 함께 송부한다.
- ④ 제출된 논문은 오·탈자의 수정을 제외한 내용상의 편집과 수정을 하지 않고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논문투고자가 진다.
- ⑤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⑥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작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순서대로 기재한다. 두 사람 이상의 복수 저자일 경우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표기한다.
- ⑦ 기타 논문의 투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의뢰)

- ①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부위원장 및 해당 전공의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논문의 원고를 해당분야의 편집위원에게 할당하고, 심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한다.
- ② 해당분야 편집위원은 할당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실적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해당분야 편집위원이 추천한 심사위원 중 3인을 선정하여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소집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 ④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출신학교, 소속기관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논문의 심사)

- ① 논문의 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게재가.” “부분수정.” “근본수정.” “게재불가” 중 하나의 심사결과와 관련 의견을 작성하여, 의뢰 받은 기간(통상 2주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분수정이라 함은 수정 후 게재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의미하고, 근본수정이라 함은 수정 후 재심사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의미한다.
- ② 위촉받은 심사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분야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논문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각자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논문심사의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논문의 체계와 완성도
2. 연구내용의 독창성과 창의성
3. 연구내용의 학술적·정책적 기여도
4. 연구방법의 적합성
5. 기타 편집위원회가 정한 사항

제8조 (논문게재의 판정)

① 논문게재의 판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가, 가, 가 가, 가, 부분 가, 가, 근본 가, 가, 부	가, 부분, 부분 가, 부분, 근본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근본	가, 부분, 부 가, 근본, 근본 가, 근본, 부 부분, 부분, 부 부분, 근본, 근본 부분, 근본, 부 근본, 근본, 근본 근본, 근본, 부	가, 부, 부 부분, 부, 부 근본, 부, 부 부, 부, 부

※ 가: 게재가, 부분: 부분수정, 근본: 근본수정, 부: 게재불가

② 해당분야 편집위원은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논문 게재 여부를 판정하고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 (수정후게재 판정 투고논문의 게재)

-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수정후게재”의 판정을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기한 내에 수정·보완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② 수정·보완된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는 해당 편집위원의 판단을 기초로 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의 판단을 기초로 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재심 판정 투고논문의 게재)

-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재심”의 판정을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기한 내에 수정·보완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동 규정은 여러분의 지적에 따라 삭제)

- ② 수정·보완된 논문의 재심은 초심에서 부분수정, 근본수정 또는 부의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들에게 맡긴다.
- ③ 재심을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기간(통상 1주일) 이내에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의 재심 결과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④ 수정·보완된 논문의 재심 결과, 초심에서 “게재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심사위원의 2인 이상이 “게재가”로 평가한 경우에는 논문 게재를 확정한다.

제11조 (게재불가 판정 논문의 심사 재신청)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신청”임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으며, 이때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은 당초의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한 위원으로 한다.

제12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

- ① 논문투고자는 심사 과정이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상세한 사유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회는 이의 제기 사유를 검토한 후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재심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사유를 이의 제기자에게 통보한다.
- ④ 재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5조 이하에 의거, 새로운 투고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치게 한다. 이때 심사위원은 원래 심사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한다.

제13조 (표절 지적의 처리)

- ① 편집위원회는 표절이란 의견이 제시되고 표절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심사를 중단한다.
- ② 이때 편집위원회는 표절 지적 내용과 관련 자료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③ 논문투고자는 다툼이 해결되었음을 증빙하는 내용의 자료를 첨부하여 재투고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유지)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와 논문투고자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 (판권 등)

- ① 《한국이민학》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한국이민학회에 귀속한다.
- ② 논문투고자는 게재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 또는 발간물 등에 게재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이민학》에 게재된 논문임을 밝혀야 한다.

제16조 (논문게재예정증명 등) 논문게재예정증명 또는 논문게재증명은 각각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 또는 《한국이민학》이 발간된 후 논문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한다.

제17조 (보칙) 《한국이민학》의 발간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원고 제출 및 집필 요강

원고 제출 및 게재

1. 《한국이민학》은 한국 및 세계 이민문제와 관련된 이론적·경험적 연구들을 심고 있다.
2. 《한국이민학》에 게재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가진 것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단, 국제 저명 학술지에 외국어로 발표된 논문은 한국어로 번역하여 게재할 수 있다.
3. 《한국이민학》은 수시로 논문을 접수한다. 《한국이민학》에 투고를 원하는 사람은 원고를 워드프로세서(흔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한국이민학회 사무국’(kjim2014@gmail.com)으로 투고신청서와 함께 전자메일로 송부하여야 한다. 투고신청서는 본 학회 홈페이지(<http://www.kimnet.org>)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원고와 함께 송부한다.
4. 제출원고는 한국어로 씌어진 것으로, 다음 원고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5. 접수된 논문은 심사위원 3인 이상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
6. 게재 결정 이후 투고자는 원고를 수정한 후, 최종원고를 담은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한다.

원고 작성지침

1. 원고 논문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A4 용지에 단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원고의 분량은 각주, 참고문헌, 도표 등을 포함하여 25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연구단편(research notes)은 10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원고는 국문으로 제목표지(논문제목·저자이름·요약문·핵심단어), 본문, 각주, 참고문헌, 표, 그림, 부록, 저자소개의 순으로 작성한다. 아울러, 영문으로 논문제목, 저자이름, 요약문(English Abstract), 핵심단어(Key Words)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5.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만 한자를 괄호 속에 함께 쓰도록 하고, 기타의 외래어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원문 뒤에 괄호 속에 함께 쓴다.
6. 원고의 제목표지에는 논문의 제목, 저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저자가 두 사람 이상인 공동연구의 경우 중간점(.)을 사용하여 옆으로 나란히 기재한다. 감사의 글, 연구비 지원기관, 교신저자 등은 *표를 하여 같은 면에 각주로 기재한다.

7. 논문의 국문 핵심단어와 영문 핵심단어는 3-5개 제시한다.
8. 국문과 영문 요약문(연구단편 포함)은 200자 원고지 5장 또는 A4 용지 단면 1/2장 이내로 작성한다.
9. 본문에서는 논문의 제목을 본문의 첫 장에 기재한다.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논문 심사 위원이 저자를 알아볼 수 있는 서술은 삼가야 한다. 세부적인 본문 서술 요령은 다음과 같다.
 - 1) 본문은 내용의 구성을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3단계 정도의 소제목을 추천한다. 소제목은 I., 1., 1), (1), ① 형식으로 단계적으로 구성한다.
 - 2) 저술 인용방식은 저자의 이름과 저서의 출판 연도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인용 페이지를 기재하도록 한다. 같은 저술을 되풀이 인용할 때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
 - (1) 저자의 이름이 본문에 언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출판 연도를 괄호 안에 제시하고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름과 출판 연도를 모두 괄호 안에 제시한다.
예 1, “…… 설동훈(1999: 10)”; 예 2, “…… (설동훈, 1999: 10)”
 - (2) 저자의 이름이 외래어인 경우, 한글로 쓰고 원명은 괄호 속에 담는다.
예, “……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85)”
 - (3) 2인 공동저술일 경우, 두 사람의 이름을 모두 제시한다.
예, “…… (유길상·이규용, 2001)”
 - (4)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일 경우 첫 번째 인용에서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제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외”를 사용한다.
예, “…… (이규용·유길상·이해춘·설동훈·박성재, 2007)”과 그 이후 “…… (이규용 외, 2007)”
 - (5) 출판 예정인 저술을 인용할 때는 “출판예정”(또는 “forthcoming”)을 부기하고, 미간행물일 경우에는 “미간행”(또는 “unpublished”)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예, “…… (Gereffi, Spener and Bair, 2002 forthcoming)” 또는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0 미간행)”
10.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한국어 문헌은 저자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외래어 문헌을 알파벳 순으로 제시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 표기를 한다. 다음은 참고문헌 작성 원칙에 따른 예다.
 - (1) 도서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유길상·이규용. 200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유길상·이해춘·설동훈·박성재. 2007.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및 중장기 관리체계 개선 방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Lin, Nan. 2002.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rnelius, Wayne A., Takeyuki Tsuda, Philip L. Martin, and James F. Hollifield (eds.). 2004. *Controlling Immigration: A Global Perspective*, 2nd edi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ereffi, Gary, David Spener, and Jennifer Bair (eds.). 2002 (forthcoming). *Free Trade and Uneven Development: The North American Apparel Industry After NAFTA*. Philadelphia, PA: Temple University Press.
- (2) 학술지 게재 논문
- 박경태. 2001. “사회적 자본으로서 NGO의 역할과 아시아 이주노동자 문제: 필리핀과 홍콩의 NGO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52(겨울): 184-205.
- 설동훈·김윤태. 2004. “대만의 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체계.” 《중소연구》 28(3): 69-117.
- 이혜경·정기선·이정환·설동훈. 2002. “국내외 한국기업의 외국인력 관리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식 관리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6(3): 47-77.
- Granovetter, Mark.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3): 481-510.
- Brown, Jacqueline Johnson, and Peter H. Reingen. 1987. “Social Ties and Word-of-Mouth Referral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4: 350-362.
- (3) 단행본 수록 논문
- 이철우. 2004. “피로써 구별되는 국민들: 혼혈인과 한국사회.” 정인섭 편,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박영사. pp. 233-261.
- 町村敬志(마치무라 타카시). 1992.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と世界都市形成.” 梶田孝道編, 『国際社会学: 国家を超える現象をどうとらえるか』. 名古屋: 名古屋大学出版会. pp. 114-133.
- 森田桐郎(Morita, Kirirora). 1987. “資本主義の世界的展開と国際労働力移動.” 森田桐郎編, 『国際労働力移動』.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pp. 1-54.
- Bourdieu, Pierre. 1986. “The Forms of Capital.” Pp. 241-258 i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edited by John G. Richards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4) 번역도서
- 伊東順子(Ito, Junko). 2001. 『病としての韓国ナショナリズム』. 東京: 洋泉社. (김혜숙 역.
2002. 『한국인은 좋아도 한국민족은 싫다』. 개마고원).

Castells, Manuel. 1989. *The Informational City: Information Technology, Economic Restructuring, and the Urban-Regional Process*. Cambridge, MA: Basil Blackwell. (최병두 역. 2001. 『정보도시: 정보기술의 정치경제학』. 한울).

Weber, Max. 1946.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translated and edited by Hans H. Gerth and C. Wright Mill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5) 번역논문

Weber, Max. 1893. “Die landliche Arbeitsverfassung.” *Schriften des Sozialpolitik* 58:62-86. (임영일·차명수·이상률 역. 1991. “농업노동제도.” 『막스 베버 선집』. 까치. pp. 289-314).

Weber, Max. 1946[1919]. “Politics as a Vocation.” Pp. 77-128 in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translated and edited by Hans H. Gerth and C. Wright Mill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6) 미간행 학위논문

최홍엽, 1997.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미간행).

Lee, Young Hwan. 1991. “The Effects of Individual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n Labor Market Outcomes: A Case Study of Korea.”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Stanford University.

(7) 학술회의 발표논문과 미간행 자료

설동훈.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권리와 생활실태.” 『한국아동권리학회 2006년 춘계학술대회: 아동 소외의 현장 —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한국아동권리학회. pp. 54-81. (숙명여자대학교 제2창학관 켄마홀, 2006·5·19)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0.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백서: 인권침해의 현장보고』.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미간행).

Schrecker, Ted. 1996. “The Borderless World and the Walled City: Metaphors for North American Social and Economic Life in the Twenty-First Century.” Paper Presented at a workshop a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Vancouver, BC, Canada, March 1996. (Unpublished).

(8) 인터넷 자료

서울특별시. 2001. 『서울 거주 외국인에 대한 여론조사』. (<http://www.metro.seoul.kr/kor2000/research/total/down/11/11-12.pdf>에서 가용. 인터넷; 2002년 7월 31일 접속).

U.S. Department of State. 2001.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01*. (Available from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4107.pdf>. Internet; accessed February 7, 2002).

ABCNEWS. 1998. "Women Forced to Work: Forced Abortions Are Conducted on U.S. Territory." *ABC News World Headlines*, April 1, 1998. (Available from <http://www.abcnews.com/sections/world/DailyNews/saipan0331.html>. Internet; accessed March 25, 1998).

(9) 동일 저자의 같은 해 저술

설동훈. 2002a. "국내 재중동포 노동자: 재외동포인가, 외국인인가?" 《동향과 전망》 52 (봄): 200-223.

_____. 2002b.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현대판 노예인가, 외국인 용병인가?" 《당대비평》 6(1): 53-68.

Petras, Elizabeth McLean. 1980a. "The Role of National Boundaries in a Cross-National Labour Market."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4(2): 157-195.

_____. 1980b. "Towards a Theory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 New Division of Labor." Pp. 439-449 in *Sourcebook on the New Immigration: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dited by Roy Simon Bryce-Laporte. New Burnswick, NJ: Transaction Books.

11. 표와 그림은 별지에 작성하고, 제목은 표와 그림의 위에 적는다. 주는 "주:"라고 시작하고, 출처는 "자료:"로 시작하여 표와 그림의 아래에 적는다.
12. 이 요강에 미비된 기타 사항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이민학 제5권 제1호의 관례에 따른다.
13. 원고 작성에 대한 문의처

(우) 151-74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김석호 교수 연구실 내 한국이민학 편집위원회

전자우편: kjim2014@gmail.com

전화: (02) 880-4103

한국이민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정: 2010년 6월 14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이민학회(이하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이민학》(이하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학술지의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들에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는 모든 사람과 그 저작물, 그리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논문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우리 학회를 통해 투고,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윤리규정

제4조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고 발표하는 모든 저자는 학회 정관에 천명된 목적의 달성과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본인의 학자적 양심을 따라 독창적인 논문을 작성·투고하며 본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위반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학회의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 ①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사회상규에 반하여 논문 출판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 (여기서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변조”는 연구 자료나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일정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아무 기여도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함).

- ② 전호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③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6조 (편집위원의 윤리적 의무) 본 학회의 편집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이나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과 관계없이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만을 근거로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⑤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⑥ 저자는 편집위원장에게 투고한 논문에 대해 특정한 인사를 심사위원으로부터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내용을 본 후 결정해야 한다.

제7조 (논문 심사위원의 윤리적 의무) 본 학회의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 심사를 위촉 받은 모든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① 모든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심사 의견서를 편집위원회에 보내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곧바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높은 수준의 학술적 기준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논문의 내용과 결과의 해석, 설명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자신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 저자와의 개인적 친분 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에 보내는 심사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심사위원은 논문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요구되는 특별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되며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심사 의견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논문이 학술지를 통해 발표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 ⑤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존의 연구가 정확하게 인용되어 있는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논문의 내용이 다른 논문과 같거나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 (논문 저자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전조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논문 저자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①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 ② 논문이 학술지에 이미 발표되었을 경우 인터넷에서 논문 삭제
- ③ 학회 홈페이지 및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위반 사실 공시
- ④ 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에 위반 사실 통보

제9조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전조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①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 ②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으로부터 해촉 및 재위촉 영구 금지
- ③ 학회 홈페이지 및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위반 사실 공시
- ④ 윤리규정을 위반한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의 소속기관에 위반 사실 통보

제10조 (이의 신청) 당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학회는 이를 판단할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 회원 중에서 5명으로 구성한다.

제12조 기타 본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상규에 따라 판단한다.

제13조 본 규정은 2010년 6월 14일자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편집위원장	김석호(서울대학교, 사회학)	
편집위원	김현식(경희대학교, 사회학)	이상립(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학)
	송유진(동아대학교, 사회학)	조민호(성균관대학교, 행정학)
	신지원(전남대학교, 사회학)	최서리(IOM이민정책연구원, 사회학)
	오계택(한국노동연구원, 경영학)	최슬기(KDI국제정책대학원, 인구학)
	이병하(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	
편집간사	권시정(성균관대학교, 사회학)	

한국이민학 제6권 제1호
인쇄일: 2015년 6월 30일
발행일: 2015년 6월 30일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
(우) 410-83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웨스턴타워 4동 9층 IOM이민정책연구원 정기선
인터넷 홈페이지: http://kimanet.org
인 쇄 처: 굿뉴스 커뮤니케이션
전화: (042) 625-1882 이메일: 6251882@hanmail.net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 값 10,000원

ISSN 2093-6044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Vol. 6 No. 1 • 2015

Articles

Australia's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Migration with Asia:
Focusing on the Issues of Asylum Seekers

Kyoung-hee Moon

Effects of Social Networks, Turnover and Job Search Method to Wage among Foreign Workers
in Korea

Hyung-gi Park

Analysi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interaction effect of National pride

He-su Yoon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Association